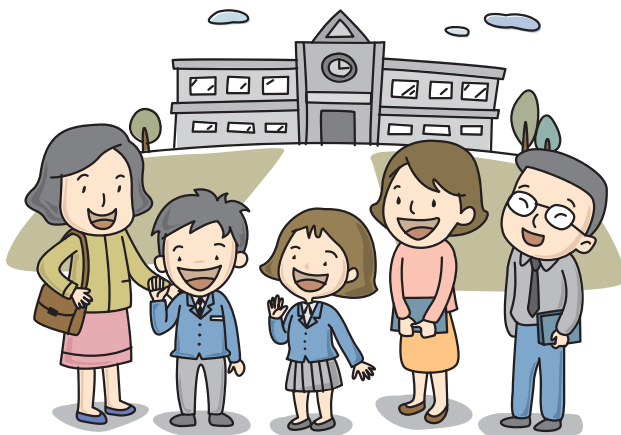


서로를 위한 약속

학교규칙 운영매뉴얼

중등용



일러두기

▶ 발간 목적

학교규칙은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그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의 집합을 뜻합니다. 학교규칙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자, 교원과 학부모들에게는 학생생활지도의 지침서 역할을 합니다. 이 매뉴얼은 학교규칙 중 주로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서술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개념과 의의,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와 운영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규칙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고 공유할 때 그 의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중요한 구성원인 학생들이 학교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스스로 만든 규칙을 실천하고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교육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쌓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매뉴얼은 최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학교규칙 제·개정 및 학생생활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과 예시자료를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다양한 개성과 욕구를 지닌 학생 문화를 반영하여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패러다임도 변화하여야 한다는 인식 하에, 학교규칙을 만들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생자치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단위학교에서는 이 매뉴얼을 활용하여 학교규칙을 정비하고, 학교구성원이 함께 만든 학교규칙 운영을 통해 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교문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활용 방법

이 매뉴얼은 학교규칙에 대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한 최근의 초·중·등 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이 매뉴얼에서는 학교규칙 제·개정 시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민주적 절차를 강화한 법령 개정의 취지에 따라, 학교규칙 제·개정의 절차와 운영 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 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료 등은 하나의 제안이므로 단위학교에서 현장의 여건과 구성원의 요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활용하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 학부모, 교원 등 학교구성원들이 학교규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학생 교육활동, 학부모 연수, 교원 연수 등에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매뉴얼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와 인성교육실천우수 학교 홈페이지(<http://school.nypi.re.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CONTENTS

제1장 학교규칙의 개념과 의의 |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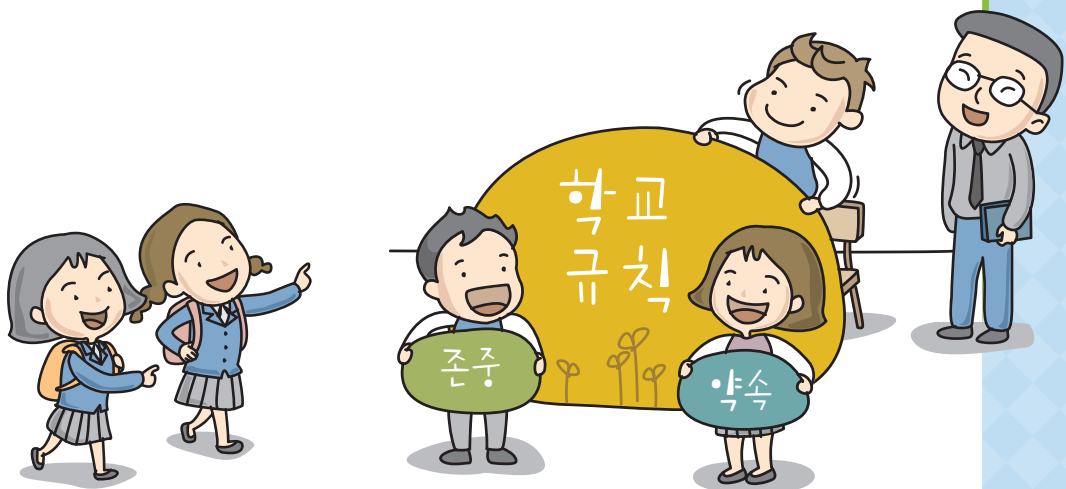
1. 학교규칙의 개념 | 9
2. 학교규칙의 의의 | 10
3. 학교규칙의 적용 원칙 | 11
4. 학교규칙이 학생, 학부모, 교원에게 갖는 의미 | 12

제2장 학교규칙 제·개정 | 13

1. 학교규칙 제·개정 원칙 | 15
2.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 개요 | 16
3. 학교규칙 제·개정 세부 절차 | 18
 - 1)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구성 | 18
 - 2) 학교규칙 제·개정안 발의 | 19
 - 3)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 | 21
 - 4) 1차 시안 마련 및 토론회 실시 | 25
 - 5) 최종 시안 마련 | 27
 - 6)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27
 - 7) 학교규칙 공포 및 정보 공시 | 28
 - 8) 학교규칙 안내 및 연수·홍보 | 28
 - 9) 적용 및 환류 | 30
4. 학교규칙 준수·실천 방안 | 31

제3장 학교규칙 운영의 실제 | 41

1. 두발·복장 등 용모 규정 | 43
2. 휴대폰 및 전자기기 사용 규정 | 47
3. 소지품 검사 규정 | 51
4.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규정 | 53
5. 학교규칙 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 | 71
6. 생활평점제(그린마일리지, 상·벌점제) | 73
7. 교육벌 | 84
8. 학생자치법정 | 94
9. 학생생활협약 및 공동체생활협약 운영 | 106



01

제 1 장

학교규칙의 개념과 의의

- 1 학교규칙의 개념
- 2 학교규칙의 의의
- 3 학교규칙의 적용 원칙
- 4 학교규칙이 학생, 학부모, 교원에게 갖는 의미



제 1 장 학교규칙의 개념과 의의

1. 학교규칙의 개념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함)은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그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학교규칙의 기본적인 기재사항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 열거되어 있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된다.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별도 지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정하는데 제약이 따르지만,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별로 법령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 학교규칙의 구성(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제1항각호)

학 교 규 칙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 징수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규정」 등)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교규칙 개정절차

2. 학교규칙의 의의

▣ 학교운영의 근간

-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고 운영하는데 법이 중요하듯이 학교생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규칙이 중요하다.
- 공동체 구성원이 약속한 학교규칙을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학생들은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다.

▣ 학칙에 대한 학교의 자율성 증대

- 학칙에는 학교마다의 특색있는 학생자치활동과 학생지도방법 등을 담아낼 수 있다. 더욱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칙 제·개정 과정에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 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증대되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학교규칙)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u>지도·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u> 학교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8조(학교규칙)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8조 <2012. 3. 21. 개정>

▣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 의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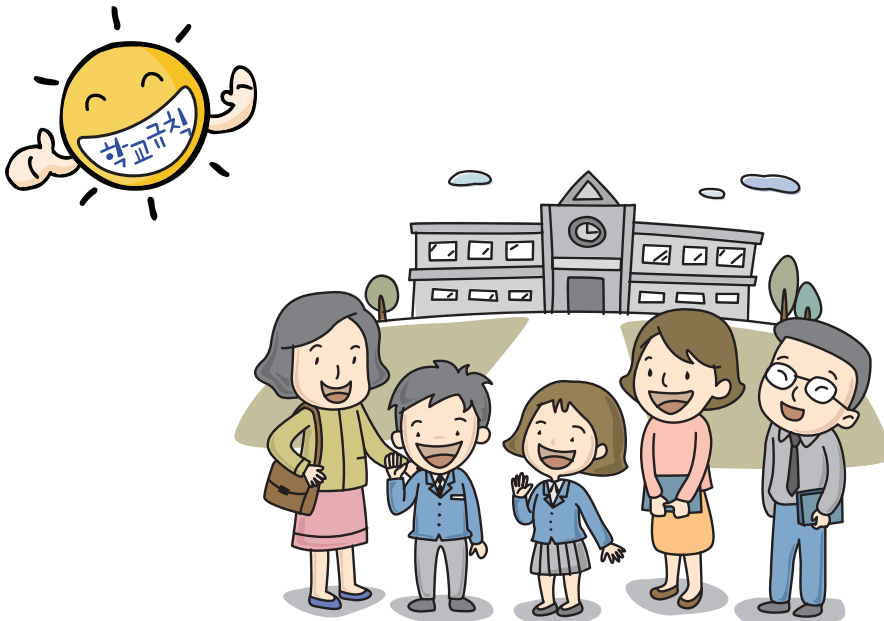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으로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학칙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단위학교에서는 이 매뉴얼이 제시하는 기본적 절차와 다양한 우수사례를 참고로 하여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u>학생의 의견을</u> 들어야 한다.	제9조 ④ _____ _____ _____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2012. 4. 20. 개정>

3. 학교규칙의 적용 원칙

-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며, 학교교육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 학부모는 가정에서 학생지도와 인성교육에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 교사는 학생지도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학생의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하여 가정,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을 확대한다.
- 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원에게 학칙의 내용을 안내·홍보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차별과 예외없이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 학생, 학부모, 교사는 합의된 학칙의 내용을 준수하여 ‘약속과 규칙이 살아 숨쉬는 학교문화 조성’에 노력한다.



4. 학교규칙이 학생, 학부모, 교원에게 갖는 의미

▣ 학생

- 학칙은 학생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며, 학생들이 스스로 만든 규정을 준수하고자 노력할 때 자치규범으로서의 본질적인 가치가 실현된다.
- 학칙은 학생들의 학습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면서, 한편으로는 학교 내·외에서의 잘못된 행동을 제한하고 구속하는 법규적인 성격을 갖는다.
- 학칙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생활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창조해 가는 학생자치활동의 원천이다.

▣ 교원

- 학칙은 학교교육 목표를 실현하고 학생들의 자아실현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엄격하게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 학칙은 학생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활동을 지원하고 조력하는 교육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 학칙은 상·벌 등 학생지도에 대한 기준이 되며, 학생 및 학부모와 소통하고 공감대를 넓혀가는 역할을 한다.

▣ 학부모

- 학칙은 학부모에게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서 역할을 한다.
- 학칙은 학부모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될 때 학교 공동체 규범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된다.
- 학칙은 학생지도 및 인성교육에 있어서 학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02

제 2 장

학교규칙 제 · 개정

- 1 학교규칙 제 · 개정 원칙
- 2 학교규칙 제 · 개정 절차 개요
- 3 학교규칙 제 · 개정 세부 절차
- 4 학교규칙 준수 · 실천 방안



{ 제2장 학교규칙 제·개정 }

1. 학교규칙 제·개정 원칙

- 학칙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동 법령의 취지와 동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개정 되어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7호부터 9호까지 사항(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 개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동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미리 학생·학부모·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학칙 제·개정은 학생들의 인격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바람직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 규제와 처벌보다는 제·개정 및 운영 과정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율과 책임 중심의 자치규칙’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 개요

- 학칙의 제·개정 절차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다.
- 학칙 제·개정 절차 역시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본적인 절차를 준수하되, 학교별 여건 및 추진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학칙 제·개정 절차의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① 국립·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현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학교규칙 제·개정 절차(예시)

절 차	추진내용	세부 추진내용
1 학칙 제·개정위원회 구성과 활동	학칙 제·개정위원회 구성	▶ 학생, 학부모, 교원으로 구성 ▶ 학칙 제·개정 제반 사항 추진
	제정·개정안 발의	▶ 교육공동체의 발의 또는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이 있는 경우
	학생 등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 학급회의 및 학생총회 ▶ 설문조사, 스티커 붙이기 등 활용
	1차 시안 마련	▶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초안 작성
	토론회 개최 (학교실정에 따라 운영)	▶ 초안의 취지와 주요 사항 안내 ▶ 의견수렴을 통한 개정안 작성
	최종 시안 마련	▶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시안 마련
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 최종 시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 운영위원회 심의 후 안 확정
3 학칙 공포·시행	학교장 결재	▶ 학교장 학칙 승인
	학칙 공포 및 정보 공시	▶ 학칙 공포 ▶ 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 발송
	학칙 안내 및 연수 실시	▶ 학교구성원 대상 규칙 안내 및 연수 ▶ 학교구성원의 규칙 준수 서약식
	적용 및 환류	▶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분석 ▶ 학교구성원의 학칙 준수 및 실천 정도 평가

3. 학교규칙 제·개정 세부 절차

1)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구성

방법 및 내용

- 원칙 : 학칙 제·개정 제반 사항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이하 ‘제·개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학생, 학부모, 교원 중에 위촉하여 구성한다.
- 구성 및 역할

구 성	역 할
• 제·개정위원회는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한다. • 제·개정위원회는 위원장, 간사(생활지도 업무 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	• 제·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 • 설문조사, 문헌조사, 의견수렴 등의 절차와 방법 결정 • 토론회, 공청회 등 주관 • 개정 시안 수립 •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대상 연수·홍보 • 기타 학칙 관련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 결정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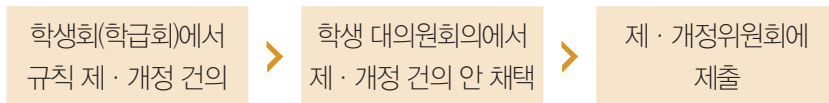
- 제·개정위원회는 학년·학기 초에 구성하고,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 학생, 학부모, 교원이 고르게 참여하도록 하며, 학교급 등 학교여건을 고려하여 학생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한다.
- 학생들의 의견 반영을 위하여 학생 대표 등 학생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지원하도록 하며, 참여 활동에 따른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의 시간 등을 조정한다.

2) 학교규칙 제·개정안 발의

❏ 방법 및 내용

- 제·개정위원회,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등에서 각각 또는 공동으로 학칙 제·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절차 및 기준을 사전에 정한다.
-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변경된 경우, 학교장이 제·개정위원회에 학칙 개정을 요청한다.

(1) 학생의 발의(학생회를 통한 발의)



- 학생회의 운영 및 의사결정 절차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본 매뉴얼 제3장 4.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규정 참조)
- 학급회의, 학급토론회, 설문조사, 스티커 붙이기 등을 통해 제·개정 절차 초기부터 학생들의 학교규칙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 학칙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이나 개정 건의, 운영에 대한 불편·불만 사항을 수시로 수렴할 수 있도록 ‘학교신문고’나 ‘우체통’ 등을 운영할 수 있다.

Tip 어린이·청소년 법제관 제도의 활용

법제처는 학생들의 법과 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일상생활 및 학교생활에서 겪는 법과 제도를 학생의 눈높이에서 평가하고 고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어린이 법제관(초등학교 4~6학년), 2012년부터 청소년 법제관(중학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학칙 제·개정 과정의 학생 참여 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므로, 향후 운영 사례를 참고하도록 한다.

(참고자료 : www.moleg.go.kr/chi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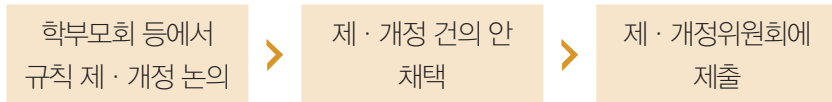
※ 참고 : 학교폭력 근절 종합포털 ‘스쿨로(<http://schoolaw.lawinfo.or.kr/>)’ 교육과학기술부와 법제처는 학교폭력 예방·진단 및 사후 대응방법과 관련 법령, 교육자료 등을 탑재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 사이트 ‘스쿨로’를 운영하고 있음

Tip 학생 옴부즈맨(Ombudsman) 제도

학교생활에서 일어나는 학칙 위반 사례를 수집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학교에 건의하고, 문제점을 찾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학생자치제도이다.

- ① 학급에서 1~2명씩 선출하여 학교장이 임명 또는 총학생회 조직 내에 옴부즈맨 부서를 신설하고 부원을 배치하여 활동한다.
- ② 학급에서 학생 간의 분쟁, 불합리한 학칙 규정으로 인한 피해, 학생과 교사간의 인권 및 교권 침해 등 사례를 수집한다.
- ③ 월 1회 학생 옴부즈맨 학년회의를 개최하여 수집한 사례의 문제점과 대책 등을 학교에 건의한다.
- ④ 학생회장단과 학교장의 정례모임을 통하여 학교생활지도 규칙을 개정하거나 학교차원에서 시정 조치할 내용을 건의한다.

(2) 학부모의 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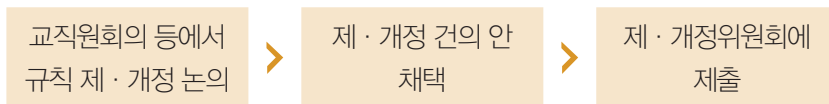


- 학부모 의견은 다양한 방법(설문조사, 인터넷 조사, 토론회 등)을 통하여 수렴한다.
- 건의안에 대한 정족수는 학교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Tip 학부모회, 아버지회, 학부모 모니터단 활동과 학칙 제·개정

- ① 학부모회 등은 학교공동체의 주체로서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② 학부모회 등은 운영 약관에 따라 월별, 분기별 모임을 가지며, 오프라인 활동과 함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온라인 모임을 병행할 수 있다.
- ③ 학교차원에서 행해지는 교육활동 중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개선을 건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칙 제·개정안을 채택하여 제·개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3) 교원의 발의



- 학년별·교과별 협의회, 전체 교직원 회의 등을 통해 문제점을 논의하고 학칙 제·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 교원의 발의는 부장교사협의회, 교직원회의(전체회의) 등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유의사항

- 학부모, 교원에 의한 발의는 충분한 사전 논의 과정을 거쳐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내용의 제·개정안 발의는 하지 않도록 한다.
- 학생들의 학습권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발의하는 시기를 조정하고, 지나치게 잦은 개정 발의는 지양하도록 한다.
- 학년말에는 당해 연도 학칙 운영 성과 등을 평가·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의견을 수렴하여 차년도 개정안에 반영한다.

3)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

방법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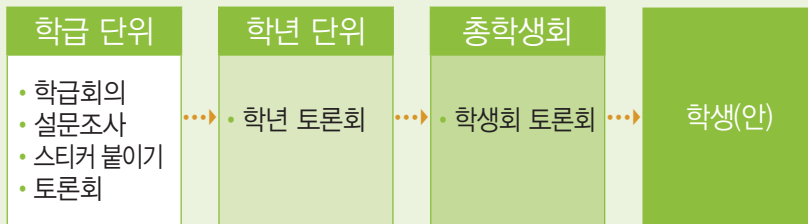
- 대상 : 학생, 학부모, 교원 등
- 방법 : 제·개정위원회가 주관, 학교 구성원으로부터 의견 수렴
 - 학 생 : 학급·학년회의, 학생대의원회 및 설문조사 등
 - 학부모 : 학부모회 및 설문조사 등
 - 교 원 : 부서별, 학년별 회의, 전체 교직원 회의 등을 통하여 의견 수렴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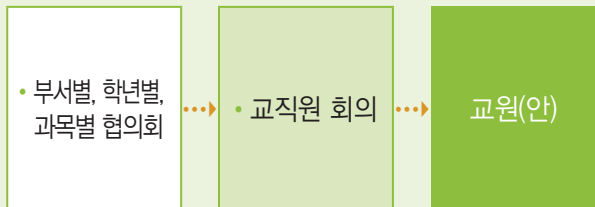
- 제·개정위원회에서 의견수렴 자료를 준비하여 각종 회의에 제공하며, 설문조사 등은 학교 실정에 맞게 실시한다.
-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생활지도 지침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학생의 인격을 침해하거나 모호한 표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쉬운 조항 등은 수정하거나 삭제한다.

Tip 의견 수렴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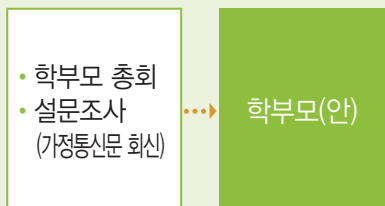
▶ 학생



▶ 교원



▶ 학부모



가 정 통 신 문

최근 사회적인 변화와 매스컴의 영향으로 자기 표현과 개성 표출의 한 방법으로 두발 자율화에 대한 논의가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발을 자율화할 경우 그에 따라 학교내·외적으로 생활지도상의 어려움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본교 생활지도의 근거로 삼고자 하오니, 현행 두발·복장 규정을 살펴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본교 두발 및 복장 규정

두발	복장
제12조 【두발】 학생의 두발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인격을 존중하되,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앞머리는 눈썹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② 옆머리는 귀를 덮지 않는다. ③ 뒷머리는 짧게 깎아 옷깃에 닿지 않는다. ④ 머리에 상흔이 있는 등 특별히 머리를 길러야 할 경우에는 학생부 선생님과 상담 후 결정한다. ⑤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머리 모양을 하지 않는다. (예:닭벼슬머리 등) ⑥ 염색과 파마머리 등 인위적인 변형을 하지 않는다.	제13조 【복장】 학생의 복장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지정된 교복을 착용하되,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기타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② 복장의 부착물(명찰, 교표 등)은 소정의 위치에 패용한다. ③ 교복을 변형하여 입을 것을 불허한다. ④ 동절기에 영하기온으로 내려가면 교복 위에 외투 또는 점퍼를 입을 수 있다. ⑤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⑥ 신발 및 가방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검소한 것으로 사용한다. ⑦ 실내화를 신고 등·하교를 하지 않는다.

2. 아래 설문에 따라 항목에 √표 또는 의견을 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규정대로	완화 필요		자율화	기타 의견
	두발	복장		

○○중학교장 드림

사례2

스티커 붙이기를 이용한 의견 수렴 방법(○○중학교)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한 용의복장, 생활평점제(그린마일리지) 규칙제정은 스티커 붙이기를 이용하여 학교 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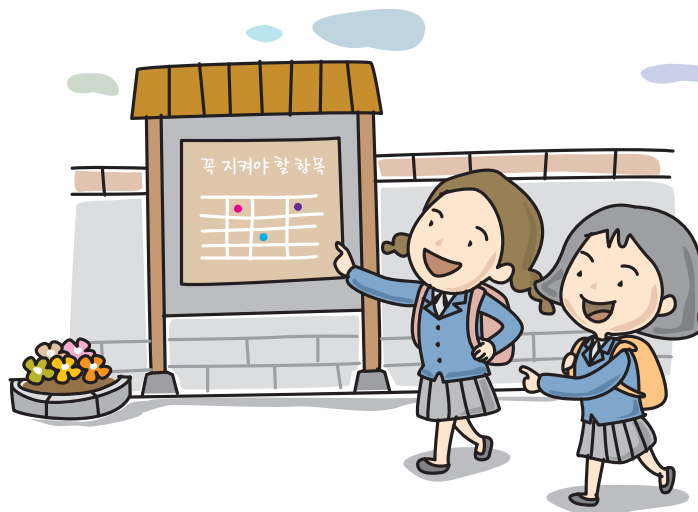
▶ 학생

- 상점 항목 및 배점 / 벌점 항목 및 배점을 열거한 후 A1크기로 출력하여 교문 등에 게시한 후 학생들이 등교할 때 꼭 지켜야 할 항목에 스티커를 붙인다.

상점항목	배점	벌점항목	배점
항목 1	1 2 3	항목 1	1 2 3
항목 2	1 2 3	항목 2	1 2 3
항목 3	1 2 3	항목 3	1 2 3
항목 4	1 2 3	항목 4	1 2 3
항목 5	1 2 3	항목 5	1 2 3
항목 6	1 2 3	항목 6	1 2 3

▶ 교원

- 같은 방법으로 교직원 식당에 게시한 후 스티커를 붙인다.



4) 1차 시안 마련 및 토론회 실시

방법 및 내용

- 제·개정위원회에서 학교공동체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1차 시안을 마련한다.
- 학교공동체의 의견 수렴 결과, 의견 차이가 큰 과제를 쟁점 토론 주제로 선정한다.
- 제·개정위원회 주관으로 학교 실정에 따라 토론회를 개최한다.
 - 토론회 주제, 일정 등 관련 사항은 학교홈페이지, 문자메시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지
 - 학생대표, 학부모대표, 교원대표가 가급적 동수로 토론에 참여하고, 제·개정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공지

유의사항

- 토론회는 학생·학부모·교원 누구나 방청할 수 있으며 질의응답 및 발언권을 갖도록 한다.

예시

토론회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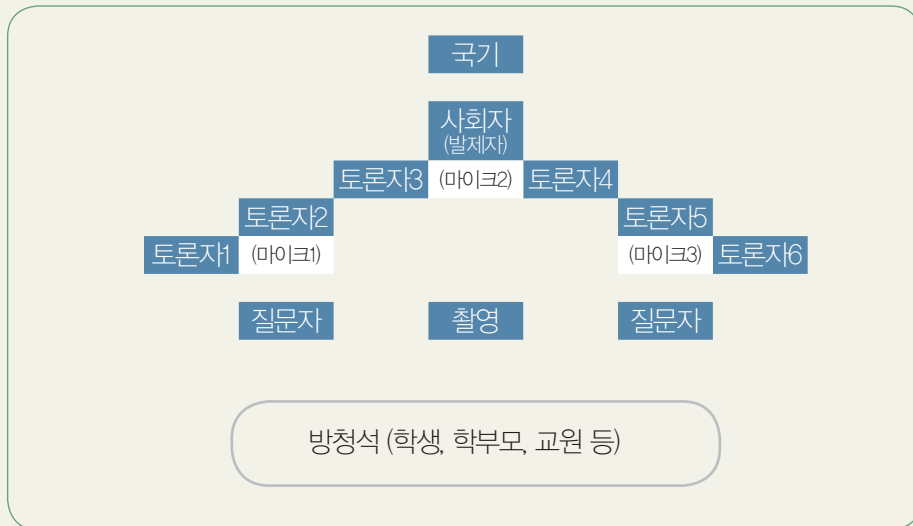
▶ 사회 : 학생회장

	순서	주관	주요내용
준비	토론회 기초 자료 준비 및 발제	제·개정위원회	
	토론회 관련 교육	"	동영상 상영
1	토론회 개최 선언	사회자	
2	국민의례	"	
3	토론회 개최 배경 및 취지 안내	"	
4	토론자 및 내빈 소개	"	
5	인사소개(토론자)	"	

	순서	주관	주요내용
6	학칙 개정안 관련 발제	발제자	발표5분
7	학칙 개정 사유 및 필요성 설명 반대의견 발제 학생, 학부모, 교사 대표 의견 발표	토론자, 사회자	발표 3분/인
8	자유로운 질의응답 (토론자 간, 토론자와 방청객 간)	사회자	20분 정도
9	토의 및 결론 도출	토론자, 사회자	발표 3분/인
10	토론회 폐회	"	
11	학칙개정안 확정	제 · 개정위원회	
12	학교운영위원회 심의→학교장 결재→공포	"	규칙 개정

예시

토론회 좌석배치도



▶ 좌석배치 유의사항

- 토론자 상호간과 토론자들의 발언 모습을 방청객이 잘 볼 수 있도록 좌석을 곡선으로 설치하고, 토론회 성격에 알맞게 주변 환경을 구성한다.

5) 최종 시안 마련

❏ 방법 및 내용

- 토론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시안을 작성한다. 필요시 투표 또는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최종안을 결정한다.
- 학칙 제·개정안 최종시안을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 유의사항

- 투표, 설문조사나 학교운영위원회 상정 시에는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신규 대조표를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6)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방법 및 내용

- 제·개정위원회 위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제·개정안의 수립 경과,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한다.
- 심의 결과는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 유의사항

- 개정안의 상정 및 심의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칙을 따른다.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7) 학교규칙 공포 및 정보 공시

방법 및 내용

-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확정하여 공포한다.
- 학교구성원이 개정된 규칙을 알 수 있도록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고한다.
- ‘학교알리미’에 탑재하여 정보공시한다. 학교규칙은 공시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수시로 공시할 수 있다.

※근거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유의사항

- 심의 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칙을 따른다.
- 공포문에는 시행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8) 학교규칙 안내 및 연수 · 홍보

방법 및 내용

- 학교장은 새로 제 · 개정된 학칙을 학교 구성원 모두가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 연수(설명회)를 실시한다.
- 필요시 학생 대의원회 대표들을 대상으로 학칙 준수 · 실천을 위한 캠프 등을 실시한다.
- 학칙 준수 서약식을 개최하거나 학생 · 학부모로부터 동의서(확인서)를 받도록 한다.

유의사항

- 학칙에 대한 연수는 매 학년(학기) 초에 실시하며, 가급적 학칙 준수 서약식 등과 연계하여 실시한다.
- 연수 및 교육을 통해 학칙에 대한 이용자들의 평가 및 의견을 잘 수렴하도록 한다.

안녕하십니까? 학생들이 낯선 환경 속에서도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월 ○일과 ○월 ○○일 이틀간에 걸쳐 학생들과 협의·토론한 결과 학생들의 바람이 기존의 학교 문화에서는 수용하지 못할 부분도 있었지만 학생 협력에 있어 눈앞의 표면적 결과보다는 학생의 장래 진로에 영향이 있는 사항인지를 판단기준으로 삼아 학생들의 주장 중 많은 부분을 수용하기로 하여 ○월 ○○일 학교규칙 선포식을 가진 후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부모님께서도 학생들 자신이 스스로 정한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아낌없이 격려해주시고 가정에서도 일관되게 지도하여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고등학교 학교규칙 내용

1. 지켜야 할 일

- 가. 교복은 학교에서 정한 스타일을 절대 변형하지 말고 착용해야 하며, 계절별 학교에서 정하는 교복을 착용한다.
- 나. 두발은 자유롭게 기르되, 학칙에 따라 자연색을 유지한다.
- 다. 신발은 자유롭게 신고 다니되, 굽이 지나치게 높은 신발(하이힐), 종아리를 덮는 부츠, 워커, 카우보이 구두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 라. 반지, 목걸이, 팔찌 이외의 장신구는 착용하지 않는다.
- 마. 비비크림, 써클렌즈, 섰크림 이외의 화장은 하지 않는다.

2. 학교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

- 흡연 : 흡연과 관련한 모든 행위(담배, 소형화기 등을 소지) 및 물품소지
- 학교폭력 : 학교폭력과 관련한 모든 행동은 절대 금지한다. (상해·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추행, 명예훼손·모욕, 공갈, 재물손괴, 집단따돌림, 사이버따돌림)
-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교사가 가르칠 의무를 방해하는 행위(수업시간 중 핸드폰 소지 및 사용, 엇드려 자는 행위, 선생님께 불손한 언행이나 행동을 하는 행위, 껌을 씹는 행위 등..)

○○년 ○월 ○일

○○ 고 등 학 교 장

9) 적용 및 환류

방법 및 내용

- 제·개정위원회는 매 학년말에 학생·학부모·교원을 대상으로 연간 학칙 운영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학년도에 개정할 사항이나 발전 방안을 검토한다.

유의사항

- 학칙 운영 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불편·불만 사항을 상시적으로 확인하여 반영한다.
 - ※ 학생 ombuds맨제도, 학교신문고, 학교우체통, 학부모 모니터단, 홈페이지 의견수렴 매뉴얼 운영 등

예시

학교규칙 운영평가 체크리스트

- 학칙 제·개정 업무 추진을 위한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는가?
- 학칙 제·개정 절차 규정이 갖추어져 있는가?
- 학칙 제·개정이 적합한 법적 근거에 의해 이뤄졌는가?

학칙 제·개정 법적 근거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0조(학생자치활동 보장),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UN아동권리협약 등

- 학칙에 인권 존중 태도 함양 및 인권에 대한 가치가 내면화 되어 있는가?
- 학칙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었는가?
- 학칙 제·개정 절차가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과정으로 진행되었는가?
- 학생회장단 및 학급 임원 선출 규정에 성적 또는 출결 관련, 사소한 징계에 대한 지나친 규제 조항은 없었는가?
-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학교규칙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였는가?
- 학칙 제·개정시 교육공동체 합의 및 학생들의 실질적인 의사가 반영 되었는가?
- 학칙을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에게 충분히 알리고 안내하였는가?

4. 학교규칙 준수 · 실천 방안

1) 서약서 · 동의서 받기

❏ 의의

- 민주적인 학교문화의 형성을 위해서는 합의된 규칙을 준수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학칙에 대한 동의서나 확인서를 받는 것은 학칙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라 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입학식이나 개학식 등 신학년이 시작할 때 학생 · 학부모에게 학칙의 전체 내용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학생 · 학부모에게 학칙을 알리기 전이나 알림과 동시에 학교의 교사들도 학칙의 내용을 숙지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 서약서는 학칙을 지킬것을 약속하고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환기하는 의미를 갖는다.



[등·하교 교문지도 내용]

교통안전 지도, 외부인 출입통제, 학교폭력 - 성폭력 예방활동
 용의복장 지도(교복, 실내화, 신발, 소지품, 지각)

[수업 중 지도 방법]

수업태도 불량 및 방해,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이행

훈계 → 벌점부과 → 교실 뒤에 서서 공부하기 → 성찰교실 입실
 → 금요일 방과 후 성찰교실 입실 → 누적벌점 5점 이상인 경우
 학생자치법정 또는 (소)선도위원회 징계

[생활평점제 운영 규칙]

벌점 항목	배점	선행 항목	배점
두발: 붙임머리, 눈썹붙이기	1점	효행 및 예절	2점
복장: 교복미착용 변형, 타교 교복 착용	2점	웃어른 공경	1점
화장: 화장, 손톱, 장신구 착용	2점	선행 효행 예절 모범상 수상자	4점
쓰레기 무단 투기, 침뱉기	1점	교내 행동덕목 실천 우수자	4점
무단외출, 도박, 외설물 소지	2점	협동심이 많은 학생	1~2점
교사의 정당한 지도 불응	4점	휴지, 쓰레기 줍기, 청소 활동 우수	1~2점
수업방해, 준비미비, 잠자기, 휴대폰 사용	3점	굶은일 솔선, 재해 지역 봉사	2~4점
적발 시 도주행위, 담배, 라이터 소지	4점	불우 이웃, 학우 돕기	2~4점
위험한 장난, 실내화 미착용	1점	싸움 화해, 폭력예방	4점
기타 경고를 필요로 하는 행위	1~4점	학교폭력 사안 신고	4점
		도벽 및 기물파손, 음주/흡연 신고	2점
		안전사고 위험 신고	2점
		습득물 신고/불온 문서 신고	2~3점
		기타	1~7점

제8조(누적벌점에 따른 학생자치법정 운영)

- ① 누적 벌점이 격월 기준 5점 이상인 학생은 학생자치법정에 참여하여 2주 기간 동안 긍정적인 부과과제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벌점을 상쇄할 수 있다. 단, 누적벌점 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하에 실시한다.
- ②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생자치법정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학생회 임원 및 선도부 자격제한)

- ① 상점누계에 관계없이 직전학기 벌점누계가 7점 이상인 학생과 직전년도 벌점누계가 14점 이상인 학생은 당해학기 학생회 임원, 학급 정·부회장, 선도부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 ② 학생회 임원, 학급 정·부회장, 선도부가 임기 내 학기 중 벌점누계가 7점 이상이거나 학년 중 벌점누계가 14점 이상인 자는 그 직책이 상실된다.

[전자기기 관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휴대폰의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하여 바람직한 학습태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제한 방법) 수업 중 휴대폰 및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한다. 단, 수업에 필요하여 담당교사가 허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위반 시의 조치) 수업 중 휴대폰 및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소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교사가 벌점을 부여한다.

[선도위원회 사안 내용 및 징계 종류]

준법위반, 예절위반, 교육활동 고의로 불참, 근태불량, 음주/흡연, 퇴폐행위, 도둑질, 집단행위, 사이버, 기타 학생 신분에서 어긋나는 행위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 정지」

[학교폭력 사안 처리]

폭행, 협박, 공갈, 상해, 감금, 추행, 재물손괴, 모욕, 명예훼손, 괴롭힘(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강요 및 성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날짜 제한 없음, 심한 경우 유급 가능함)
7. 학급교체
8. 전학(강제 전학 조치)

학교 폭력 및
비행 신고 전화

학교전화 (00-0000-0000)
담임선생님 전화 (000-0000-0000)
생활지도부장 (000-0000-0000)
배움터지킴이(주로 야간 000-0000-0000)

----- 학부모 동의서 -----

2012학년도 ○○중학교 학교규칙 및 지도계획을 잘 읽고 이해하였으며, 규칙을 잘 준수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학년 반 번 학 생 성 명 ○ ○ ○ 서명

학부모 성 명 ○ ○ ○ 서명

○○년 ○월 ○일

○○중학교장 귀하

학생 권리 및 의무 사항 규정집 수령 확인증

_____의 학부모/보호자님께

친애하는 학부모/보호자님께

여러분의 자녀는 학생 규정집을 한 권씩 받았으며 이것을 읽고 부모님께 전해 드리도록 지시 받았습니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이 규정집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의문이나 걱정되는 바가 있으시다면, 그것을 적어서 담임교사에게 보내시거나 해결을 위해서 교감선생님과 면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학생이 학생의 권리 및 의무 사항 규정집을 읽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아래의 양식을 완성해서 여러분의 자녀로 하여금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샤프스타운 고등학교 학교장 ○○○ 드림

확 인 증

샤프스타운 고등학교의 학생 권리 및 의무 사항 규정집을 받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일 자:

학 생: _____ (학번: _____)

학부모/보호자: _____ (서명)

출처: 서울시교육청(2007). 외국의 생활규정 들여다보기.

2) 학교행사를 통한 공유(서약식 등)

의의

- 학칙 준수 서약식은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 학칙에 따라 서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서약함으로써 학칙이 중심이 되는 학교전통을 확립할 수 있다.
- 또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 준법의식 등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는 중요한 교육활동이다.

유의사항

- 신입생 입학식 또는 학교규칙의 제·개정 시에 학생·학부모·교원이 함께 참여하는 학칙 준수 서약식, 학교규칙 개정 선포식 등을 통하여 학칙 준수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 협약식이나 서약식이 학생들에 대한 학칙 준수를 강요하는 요식 행위이거나 징계를 위한 강제 수단이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학칙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활용한다.



예시

학교규칙 준수 선언문

우리는 ○○중학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 ▶ **학 생** 우리는 선·후배 및 친구들을 사랑과 믿음으로 존중하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학교규칙을 준수한다.
- ▶ **학부모** 우리는 자녀들이 공동체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바른 품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지원한다.
- ▶ **교 원** 우리는 학생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며 다양한 경험과 체험을 바탕으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년 ○월 ○일

학생 대표 :

학부모 대표 :

학교장 :

사례 1

학칙 준수 서약식(○○여고)

○○여고, 학칙 준수 서약식 열어

○○여고(교장 ○○○)는 지난 10일 학교 특색과제인 학생 중심의 학교문화 선도 학교의 일환으로 학칙 준수 서약식을 가졌다. ○○○ 학생회장은 학생들이 자필로 서명한 서명지를 교장에게 전달했다.

지난 3월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여고는 6월 학칙개정위원회를 구성, 새로운 학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학생회를 개최해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등을 통해 학생 · 학부모 ·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9월 22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출처: 경남신문, 2011. 10. 12.

사례 2

학칙 준수 서약식(○○초)

○○초, '학칙 준수 서약식' 가져

— 생활규범, 안전생활 규칙, 기본학습 방법 실천하기 등 다짐의 시간 —

○○초등학교(교장 ○○○)는 4일, 자랑스러운 학교전통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생 · 학부모 · 교직원 등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학칙준수 서약식'을 가졌다.

이날 서약식에서는 전교학생회장이 행사를 진행한 가운데 학칙에 대한 설명 및 ○○○어린이 학교생활규범을 안내하고 실천을 다짐하는 결의와 함께 '나의 명예실천약속'을 선언했다. 특히 '○○어린이 학칙 준수 서약식'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생활규범 지키기, 안전생활규칙 지키기, 기본학습방법 실천하기, 매일 학습일기쓰기' 등의 실천 약속을 학생들이 직접 글로 써서 교장선생님께 실천 다짐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교장은 “세계 제 1의 꿈과 재능을 키우는 명품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학칙 및 안전생활에 대한 노력을 학교공동체구성원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호남교육, 2011. 4.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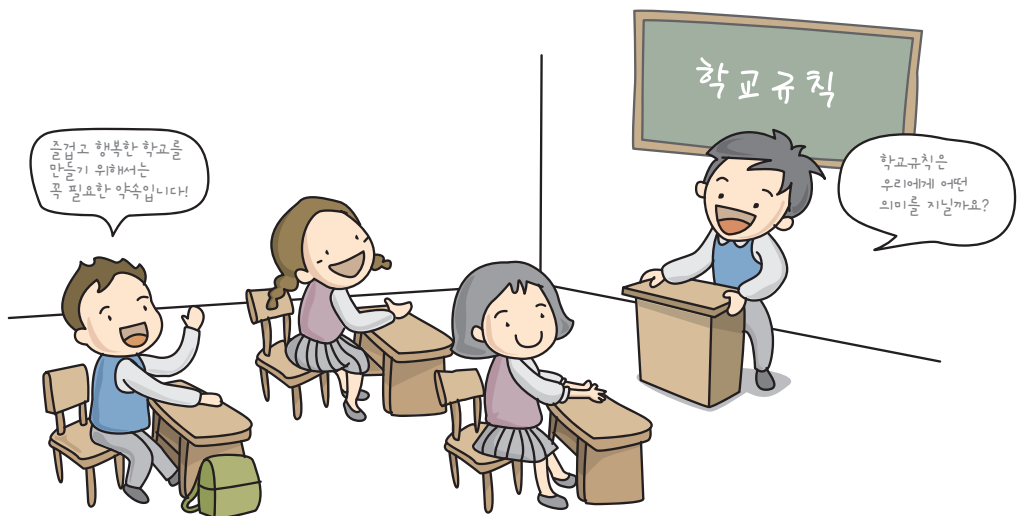
3) 교육활동과 연계

의의

- 포스터나 만화, PPT, UCC 등 다양한 형태로 학교규칙을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학칙에 대한 친근감을 가질 수 있다.
- 수업시간을 통해 학칙의 의미를 논의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칙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유의사항

- 특정 교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교과영역 적용을 통해 학칙이 실천, 준수되도록 한다.
-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활용하여 교육활동과 연계되도록 한다.



■ 목적

- 행복한 학교생활, 평화로운 교실을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 학생들이 수업시간중 과제의 하나로 학교규칙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학교규칙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인다.
- ‘범교과 프로젝트 수업’을 추진함으로써 수업혁신의 영역을 확대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규칙을 검토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주요 방향

- 수업시간중 학교규칙에 관한 프로젝트 활동을 함께 할 연구팀을 구성한다.(공모, 학년별로 팀이 구성되면 가장 좋음)
- 프로젝트 수업의 시기, 내용, 방법 등은 ‘학교규칙 프로젝트 수업 연구팀’에서 결정하고, 각각 역할 분담에 따른 프로젝트 활동을 수업중에 실시한다.
- 3월말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하여 4월초에 ‘학교규칙 프로젝트 수업 주간’을 설정하여 집중 실시한다.
- 프로젝트 수업 결과물은 전시도 하고, 학교규칙 공청회를 통해 종합, 발표한다. (종합보고서 책자 등은 방학중 작성, 인쇄함)

■ 세부 계획

주요 영역(선택)	관련 교과	수업중 주요 활동 내용(선택)
학교규칙 내용 관련 예술적 표현	음악, 미술, 체육 등	패러디, 홍보물, 포스터, 모자이크, 만화 등 다양한 음악적 표현, 조형물 제작 등
학교규칙 관련 글쓰기 수업	국어 등	에세이, 시, 체험수기, 노래가사 바꾸기, 콩트 대본 만들기 등
학교규칙 관련 주제 토론 수업	사회, 도덕 등	학교규칙의 의미, 방향 등 미니 토론회, 인터뷰 보고서, PPT 만들기 설문지 만들기, 퀴즈만들기 등
동영상, UCC 제작 실습	기술, 과학 등	관련 사진, 비디오 등을 모아 동영상 제작하기 (모둠별 활동 공모), 소품 만들기
영어로 표현하기	영어 등	학급, 학교규칙을 영어로 쓰고 말하기, 영어 노래 표현, 회화 대본 만들기
기타	동아리 등	연극, 율동, 춤

03

제 3 장

학교규칙 운영의 실제

- 1 두발 · 복장 등 용모 규정
- 2 휴대폰 및 전자기기 사용 규정
- 3 소지품 검사 규정
- 4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규정
- 5 학칙규칙 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
- 6 생활평점제(그린마일리지, 상 · 벌점제)
- 7 교육벌
- 8 학생자치법정
- 9 학생생활협약 및 공동체생활협약 운영



{ 제3장 학교규칙 운영의 실제 }

1. 두발·복장 등 용모 규정

❖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7호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의의

- 학생생활지도의 기본적인 사항이며, 건전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갖게 하는 기능을 한다.
- 용모는 학생들의 개성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일률적이고 강제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을 정하고, 정해진 규정에 따라 생활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적용시 유의점

- 학교급, 학교 특수성에 따라 결정하되,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
- 학생 용모에 대한 사항을 학교장의 의사에 따라 일률적으로 제한하거나, 개별 교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학생답게’, ‘단정하게’ 등의 불명확한 표현은 최소한으로 한다.
- 복장의 경우, 실내·외, 운동장, 급식실, 과학실험실 등 장소별, 수업시간, 등·하교 시간 등 시간별로 상황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준을 두는 것이 규칙을 적용하기에 좋다.

사례 1 두발·복장 규정(경북 ○○중학교)

1) 운영 목적

학생의 복장과 용의를 단정하게 하여 검소하고 건전한 학교생활 기풍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의·복장 규정 및 미 준수 학생에 대한 지도

① 복장 규정

- 복장은 언제나 단정하고 청결해야 한다.
- 학생증을 항상 소지하며 명찰은 지정된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 하복착용은 5월 중순~9월 하순, 동복착용은 9월 하순에서 익년 5월 중순, 하복 및 동복 입기 전 춘추복 착용을 가능하게 한다. 세부 일정은 기후에 의해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 동절기 교복위에 방한용 덧옷을 착용할 수 있지만 수업시간에는 착용하지 않는다.
- 교복의 원형을 임의로 바꾸는 행위(바지 및 치마의 길이나 폭 변형)는 엄금 한다.
- 여학생 동복 조끼는 남학생용으로 착용이 가능하다.(단, 색상은 동일해야 함)
- 여학생 교복 하의는 치마 착용을 원칙으로 하되, 바지도 착용할 수 있다.

② 두발 규정

- 두발은 항상 정결하고 단정하게 관리한다.
- 두발의 길이에 제한을 두지 않되 다음 사항을 권장한다.
 - 남학생의 앞머리는 눈을 덮지 않는 정도로 하고, 옆머리와 뒷머리는 귀와 옷깃을 덮지 않는다.
 - 여학생의 머리 길이는 자율로 하되 뒷머리가 총이 나지 않게 하고, 옷깃에 닿을 경우 묶도록 한다.
- 파마, 염색, 삭발, 모발용 고착제 사용, 모자 착용, 수염 기르는 행위를 금지한다.

③ 규정 미 준수 학생 지도

- 복장 및 두발 규정 미 준수 학생 지도의 원칙은 상·벌점제에 의한 지도
- 2012학년도부터 학생 자치법정과 연계하여 지도
- 2012학년도부터 매월 '베스트 복장 & 베스트 두발 학생' 콘테스트 개최
- 복장 및 두발 규정을 거듭 위반하여 교내 봉사활동을 할 경우 한문 고전을 통한 인성교육과 연계한 활동 실시
 - 한문 고전(명심보감, 사자소학 등) 속 청결한 복장 관련 부분 익히기
 - 규정 위반에 대한 반성문 작성 및 '내가 만들어보는 용의 복장 규정' 프로그램 실시
- 학생 자치회 및 학생 의견 창구 등 다양한 경로로 용의 복장에 대한 건의 접수 및 규정 개정 시 반영

▶ 미국 Stoller Middle School (Oregon주 Portland) 규칙

(복장규정) 외투와 모자는 실내에서 착용 금지한다. 바지는 허리에 걸쳐야 하며, 바닥에 끌려서는 안된다. 옷에 폭력 및 인종·성차별을 조장하거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글자를 새기거나 쓰면 안된다.

▶ 호주 St Margaret's Anglican Girls School 규칙

(복장규정) 교복 착용 규정, 자유복 착용 규정 등 엄격 적용하며, 신발은 갈색 가죽 신발, 체육시간 흰색, 검은색 운동화로 제한한다. 가방은 마가렛 학교 가방을 사용하도록 한다.

(두발규정) 머리길이가 칼라 밑으로 내려올 때 리본으로 묶어야 하며, 머리색깔은 자연 색을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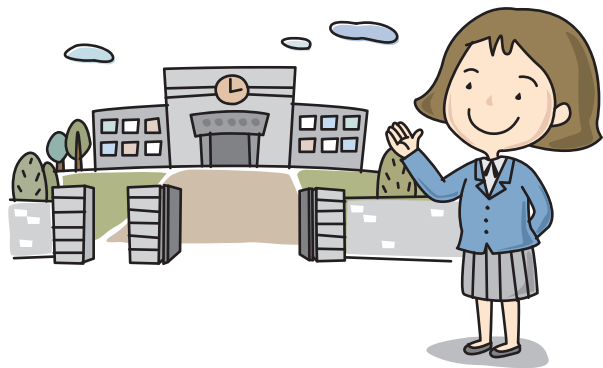
(용모규정) 학생들의 화장 및 손톱 매니큐어는 금지한다.

▶ 일본 오키나와 현립 아에야마 상업고 규칙

(복장규정) 학생은 등·하교 및 수업시간 중에 교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두발규정) 파마, 염색을 금지한다.

출처 : 조금주(2008), 외국의 중·고등학교 규칙 내용 분석의 시사점, 비교교육연구(제18권 제호)



2. 휴대폰 및 전자기기 사용 규정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7호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의의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일상생활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MP3,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 하지만 무분별한 전자기기의 사용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타인을 배려하고 수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기준을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적용시 유의점

-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여 정하되, 학교급에 따른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규칙위반에 따른 벌칙규정을 마련할 때에는 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설정하지 않도록 한다.

사례 1

휴대폰 사용 규정 제정 및 운영(경기 ○○중학교)

1) 운영 목적

○○교육가족이 학교 내 휴대폰 사용 규정을 함께 정하여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이 휴대폰을 유용하고 예의 있게 사용하며 함께 정한 약속을 실천하도록 하여 나와 네가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있다.

2) 운영 절차

단 계	주요 실천 내용
규정만들기	▶ 휴대폰 사용 규정에 관한 학급 자치회 개최 ▶ 휴대폰 사용 규정에 관한 학생, 학부모, 교사 토론회 개최 ▶ 휴대폰 사용 규정 제정을 위한 교육가족 협의회 개최 ▶ 휴대폰 사용 규정 제정 및 공고
연수 · 홍보	▶ 가정통신문 홍보, 규정집 제작 학교홈페이지 홍보 ▶ 휴대폰 사용 및 규정 운영에 관한 교원 협의회
시행	▶ 휴대폰 관리 가방 구입 ▶ 교내 콜렉트콜 전화기 설치 ▶ 휴대폰 사용 제한 거부 학생에 대한 학생, 학부모 상담 ▶ 휴대폰 사용 제한 거부 학생에 대한 학급 동의 ▶ 휴대폰 사용 학생 생활평점제에 의한 벌점 부과
학생 선도 및 표창	▶ 우수 학급 및 학생에 대한 칭찬 · 격려의 날 운영 ▶ 휴대폰 사용 벌점 학생 즉시 담임선생님 상담 ▶ 상습적으로 규정을 어기는 학생은 상벌위원회에서 행동 교정 협의회 개최 – Wee 클래스 상담 지도 – 학급 핸드폰 수거 봉사활동

3) 적용의 실제

① 규정만들기 단계

본교는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하면서 휴대폰 사용과 제한에 관련한 항목도 함께 논의하는 절차를 가졌다. 이에 대한 논의와 준비 과정은 다음과 같다.

○ 학생생활규정 제정에 대한 공고(3. 14.)

두발, 복장, 용모, 핸드폰 및 MP3, 욕설 및 비방, 집단 따돌림, 폭행 및 괴롭힘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공고하여 교육가족들이 의견을 공론화할 기회를 주었다.

○ 휴대폰 사용 규정에 관한 학급 자치회 개최(3. 28.)

휴대폰 사용 규정을 포함하여 학생생활규정 제정에 관한 학급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급 자치회를 열고 교육가족 토론회에 나올 대표 토론자를 추천하도록 하였다.

○ 휴대폰 사용 규정에 관한 학생, 학부모, 교사 토론회 개최(4. 1.)

학생 대표, 공개 모집한 학부모, 교사대표들이 휴대폰 사용 규정을 포함한 학생생활규정 항목에 대해 항목별로 토론하였으며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에서는 휴대폰 소지는 허용하되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는 사용을 제한한다.
- 이를 위해 담임교사는 조례 시간에 핸드폰을 수거하여 보관하고 종례 시간에 되돌려 준다.
- 학생들이 긴급한 상황에 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교내에 콜렉트콜 전화기를 설치한다.
- 불가피하게 휴대폰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는 사전에 담임교사에게 허락을 받아 소지하되 수업시간에는 반드시 꺼놓는다.
- 위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어렵거나 거부하는 학생들은 담임교사와 학부모가 합의하고 학급원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에게 허락을 받는다.
- 위 합의 사항을 어긴 학생은 벌점을 부과하며 반드시 담임선생님과 면대면 지도를 받으며, 반복적으로 약속을 어길 경우 상벌위원회에서 원인행동 치유를 위한 협의를 한다.

○ 휴대폰 사용 규정 제정을 위한 교육가족 협의회를 개최(4. 6.)하여 토론회의 내용을 반영한 정보기기 사용 규정 제정

○ 휴대폰 사용 규정 공고(4. 18.)

② 연수, 홍보 단계

- 가정통신문 홍보, 규정집 제작 학교홈페이지 홍보
 - 학칙의 개요를 가정통신문으로 홍보하고 학칙 전문을 공고하여 5월 한 달 간 의견을 수렴 및 수정 기간을 두었음
- 휴대폰 사용 및 규정 운영에 관한 교원 협의회
 - 5월 한 달 간 6회에 걸쳐 교원협의회를 통해 휴대폰을 포함한 학칙의 구체적 실시 방법 및 지도방법 통일을 위한 협의회를 실시함

③ 시행 단계

- 학생을 존중하기 위해 아침맞이 허깅(hugging), 배려와 나눔을 위해 더불어 사는 평화교육, 마음열기 상담실 등 운영
- 휴대폰은 학급별로 담당 학생을 지정하여 조례시간 직후에 자발적으로 수거함
-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대로 학교에 콜렉트콜 전화기 설치함
- 휴대폰 보관 가방을 구입하여 학급에게 제공함

④ 선도단계

-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담임교사에게 허락을 받아 특정일에 휴대폰을 사용한 학생들이 있었으나 수업 시간에 사용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음
- 휴대폰 수거 담당학생에게는 교내 봉사활동 시간 인정

4) 적용상의 유의점

- 휴대폰 사용은 학칙의 한 항목이므로 학생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학칙의 시행이 학생중심, 배움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휴대폰 사용 규정 제정에 있어 단계적으로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준수할 때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가 가능함
- 학생과 학부모와 합의사항을 학교장이나 교사들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먼저 보일 때 학생들의 자발성을 유도할 수 있음

3. 소지품 검사 규정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7호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의의

- 청소년 시기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담배 및 약물류 등의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무기류, 음란물 등 학교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물건의 소지 및 사용을 지도·예방함으로써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적용시 유의점

- 교사·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을 결정하고 그 이외의 경우는 금한다.
- 소지품 검사는 반드시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급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은 지양한다.
예시1) 학생이 흡연한 상황을 보았거나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흡연한 사실을 부인할 때
예시2) 약물복용으로 인해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보이거나 약물 복용 상황을 보았다는 제보가 있을 때
예시3) CCTV 또는 제보에 의해 절도 혐의의 가능성이 충분하나 그 사실을 부인할 때
- 소지품 검사 시 학생, 학부모는 교사의 전문적·교육적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사는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한다.

사례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미국 연방대법원 New Jersey v. T.L.O. 469 U.S. 325(1985)

- 실험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을 발견하고 흡연 사실을 물었으나 부인하자 지갑을 수색하였고 마리화나와 관련될 수 있는 종이가 발견되자 더 자세히 수색하여 약간의 마리화나와 관련 거래가 의심되는 편지가 발견됨
- 해당학생이 수색이 부당함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자, 재판부는 학생의 사생활보호와 교육환경 보호는 서로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결하였음
- 즉,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수색(소지품 검사)이 가능하며, 그 한계는 연령·성별, 수색 행위의 성격에 비추어 과도하게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은 수준에서 가능함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2010). 학생권리신장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예시

학칙 중 소지품 검사에 관한 조항

제00조 (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

- ① 학생증은 항상 소지한다.
- ② 학생은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성냥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류(공구류, 칼 등)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된다.
- ③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 입회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 ⑥ 제3항에 따른 소지품의 검사는 담임교사 또는 생활지도부장이 실시한다.

4.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규정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17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8호

〈초·중등교육법 제17조〉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는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의의

- 학생자치활동은 학생들과 관련된 학교의 여러 의사 결정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그들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참여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활동이다.

유의사항

- 학생자치활동을 위해서는 학교장을 비롯한 교원들의 조력과 지도가 중요하다.
- ‘창의적 체험활동’ 중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자치활동 운영

구 분	주 요 내 용
정기적 학생대의원회	학생회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학생들의 의견과 요구 사항을 수렴하고 결정하는 회의
전교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공명선거협약서 작성과 입후보자 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입후보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평가하고, 학생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는 활동
스승의 날 행사	스승의 날 행사를 ‘선생님께는 감사를 학생에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제 참여 프로그램으로 구성
체육대회	학생회(체육팀 중심)와 담당교사가 협의를 통해 모두가 참여하여 자신의 능력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체육대회 준비
축제	학생회가 기획하여 개인의 다양성과 협동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장을 마련하고 ‘축제는 소통문화’ 라는 인식 공유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학교 학생자치활동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 활동을 통하여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기 능력의 배양으로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지덕체가 조화로운 인성을 길러 자유롭고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며, 나아가 더불어 사는 시민사회생활을 체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 17조(자치활동), 동법 시행령 제9조제8호 및 제30조에 의거하여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한다.

제2장 학 생 회

제4조(명칭) 본회는 '○○○○학교 학생회'라 칭한다.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인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6조(권리 및 의무) 본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본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7조(활동) 본회의 회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종교·사회단체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자문 또는 지도를 구할 수 있다.

제8조(협의·지원사항) 본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연구 활동
2. 문화·예술·체육·취미 활동
3. 각종 봉사 활동
4. 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 활동
5. 학생 옴부즈맨 활동
6. 기타 학생자치활동

제9조(승인) 본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기구) ①본회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해 학생총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학급회의, 동아리연합회를 둔다.

② 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본교 교원으로 구성하는 학생자문위원회를 둔다.

제 3 장 학생총회

제11조(구성) 학생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 중인 전체 학생으로 한다.

제12조(권한) 학생총회는 다음 각 항의 권한을 가진다.

- ①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 ② 기타 학생 활동에 관한 중대한 사항 토의 의결

제13조(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으며 궐위 시 부회장이 대행한다.

제14조(회의 및 소집)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 ② 임시총회는 대의원회 결의 및 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학생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 4 장 대 의 원 회

제15조(구성) 대의원회는 운영위원회 임원, 학급의 대표, 동아리연합회 대표로 구성한다.

제16조(의장) ① 대의원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한다.

- ② 대의원회의 의장은 대의원회의 운영을 맡으며 대의원을 대표한다.

제17조(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1년(3월~다음해 2월까지)으로 한다.

제18조(회의 및 소집) ① 대의원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학생회장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소집한다.

- ② 대의원회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 ③ 대의원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할 수 있다.
 - 1.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3. 학생자문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제19조(업무 및 권한) 다음 각 호를 심의·의결한다.

- 1. 학생회 운영 계획 및 운영개정안에 대한 심의
- 2. 학생자치활동 예산운영(안) 심의
- 3. 대의원 및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 처리
- 4. 대의원 및 학급회에서 건의한 사항 심의
- 5.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개선 심의
- 6.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학생회(안) 발의 및 심의
- 7. 학생 총회 소집
- 8. 정·부회장, 각 부장 및 차장 불신임 결의

9. 학생회 정·부회장 당선자(재투표 결과) 및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학생회장·부회장 대표 선출

10.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 및 심의

제20조(의결) ①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대의원회는 정·부회장, 각 부장 및 차장이 학생회 운영상 중대한 과오를 범했을 때는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으며, 불신임 결의는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자격상실) ① 본회 대의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1. 학생선도위원회가 요구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학생조치가 확정되었을 때

제 5 장 운영위원회

제 1 절 정·부회장 및 각부 부·차장

제22조(임무) ① 회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를 대표한다.
 2. 학생총회,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 의장이 된다.
 3. 운영위원회의 각 부장과 차장을 학교장에게 추천한다.
 4. 학생 주도의 학교행사, 학생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
 5. 자치활동 예산 편성 및 운영의 자율권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궐위 및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각부 부장은 제 29조의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제23조(선출) ① 정·부회장은 제6장 제1절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각부 부·차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해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24조(임기) 정·부회장 및 각부 부·차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25조(자격상실) ① 정·부회장 및 각부 부·차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1. 대의원회의 불신임 의결에 따른 학교장의 승인
2. 학생선도위원회가 요구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학생조치가 확정되었을 때

제 2 절 운영위원회 활동

제26조(구성)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부회장, 각 부 부장 및 차장으로 구성된다.

제27조(업무 및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학생회 운영 계획안 수립
2.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3. 학생자치활동 예산안 편성 및 집행
4. 대의원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 추진
5. 학생회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팀 운영
6. 학생옴부즈맨제도 운영
7. 기타 중요한 사항 집행
8. 긴급한 사항 발생으로 인하여 대의원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생자문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추후 대의원회의에 그 집행 방안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회의 및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학생회장은 운영위원회 개최에 앞서 필요 시 학생자문위원회에 학교생활에 관련된 제반 도움 자료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부서) 운영위원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며 그 임무는 각 호와 같다.

1. 총무부(팀) : 예산, 회계 및 기타 필요한 사무
2. 문화부(팀) : 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활동에 관한 사항
3. 학습부(팀) : 학습활동 및 학습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4. 체육부(팀) : 회원의 심신 단련 및 체육 활동에 관한 사항
5. 생활도우미부(팀) : 교내에서 학생생활규정 지키기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 활동
6. 옴부즈맨부(팀) : 학교 생활전반에 대하여 학생들의 생활규정 개정 요구, 불편·불만사항 모니터 및 해결 방안 활동
7. 정보관리부(팀) : 네티켓 및 인터넷 클린운동에 관한 사항

출처: 경상남도교육청(2010), 학교생활규정표준안.

제 3 절 학 급 회

제30조(구성) 학급회는 각 학급의 재학생으로 구성된다.

제31조(임원) 학급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장 1인, 부회장 1인, 학생회에 준하여 부장 ○인(○○부(팀), ○○부(팀), ○○부(팀), ○○부(팀), ○○부(팀), ○○부(팀), ○○부(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32조(임원의 임무) 학급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학급반장은 학급을 대표하며 학급회의 시 학급회 의장이 된다.
- ② 학급부반장은 반장을 보좌하며 반장 부재시에는 반장을 대리한다.
- ③ 각 부서의 부장은 제29조에 규정한 각 부서의 임무 내용에 준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제33조(협의 및 의결) ①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되는 사항, 건의사항, 기타 학급의 특색 사안 등을 협의·의결한다.

- ② 학급회의 협의 및 의결 사항은 담임교사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담임 및 부담임 교사는 학급회의 자문위원이 된다.

제34조(회의) 학급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 ① 정기회의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 ② 임시회의는 학급 재적수 과반수이상의 요구 및 학급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학급반장의 발의로 소집한다.

제35조(자격상실) 학급반장, 부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1. 학생선도위원회가 요구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학생조치가 확정되었을 때

출처: 경상남도교육청(2010), 학교생활규정표준안.

■ 회의 준비

- 날짜와 시간을 미리 정하고 회의 진행 시 준비물(국민의례, 회의 차례, 유인물, 의사봉 등)을 준비
- 필요시, 회의 진행자에게 실제 회의 진행 상황과 같이 역할극을 해보도록 하여 진행방법을 숙지시킨다.

■ 회의용어 사용

- 동의(動議)제안
“~을 어떻게 하자(합시다).”고 제안하는 것으로, 동의(同意)와 다르다.
- 재청(再請)
위 동의를 의제로 삼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은 “재청이요.”라고 말한다. 재청이 없으면 동의안은 자동 폐기된다.
- 동의(動議)의 선포
동시에 재청이 있으면, 의장은 곧 “재청이 있었으므로 000의원이 제출한 의안은 의제로 상정합니다.”라고 선포한다.

■ 토론

- 토론의 순서는 ‘제안 이유 설명→질문→토론→수정안→재수정안→토론 종결’ 순으로 한다.
- 질문은 잘 모르는 것만 해야지 질문의 형식을 빌려 반대 의견을 말해서는 안 된다.
- 토론은 찬성과 반대 의견을 교대로 발언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원 동의에 대체로 찬성하지만 부분적으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을 때는 수정동의를 낼 수 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면 즉시 토론에 들어간다.
- 수정동의에 대해 재수정안을 낼 수 있으며, 이때 표결 순서는 재수정안, 수정안, 원안 순이다.
- 2/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으며, 제안자의 최종 결론 발언을 시키는 것이 좋다.

■ 표결

- 재수정동의안, 수정동의안, 원동의안의 순으로 표결한다. 회의장에 없는 위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고, 표결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
- 표결 시에는 어느 한 쪽에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하고, 한 번 행한 표결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정하지 못한다.
- 의장의 캐스팅보트 행사 유무는 미리 명시해 두거나 표결 전에 대의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 발표시 요령

구 분	발표 내용
처음 의견	~은 ~라고 생각합니다. / 왜냐하면 ~이기 때문입니다.
보충 할 때 의견	~의 의견에 보충하겠습니다. / 저는~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수정 의견	~의 의견도 좋지만 / ~은 ~라고 하였는데 ~을 ~라고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대 의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질문할 때	~은 잘 모르겠습니다. /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 지도교사(학급담임, 학생부장, 학교장)의 역할

- 첫 회의는 산만하고 잘 진행되기 어려우므로 집행부원 중심으로 미리 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회의를 개최해 본다.
- 회의 진행에 심각한 방해요소가 있을 경우에는(의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등) 올바르게 잡아준다.
- 의장이 어떤 사안에 대해 참고(전문지식과 정보 제공)발언을 요할 때, 전체학생이 그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회의가 진행될 때, 교사는 의장의 동의를 구한 후 참고발언을 해줄 수 있다.
- 회의 도중에는 가급적 의사진행 발언이나 의사결정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회의 마무리 단계에 의장의 제안으로 지도 조언을 해 줄 수 있다.

예시 4

학생(학급)회의 진행 모형

순서	단계	진행구조	진행요령
1	개회 선언	“지금부터 제 ()회 학생대의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① 사회: 사회는 부의장이 맡아서 진행하며, 주로 진행 순서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② 개회 선언: 의장, 의사봉을 세 번 두드린다. ③ 개회 전에 각종 준비물을 확인한다.(의사봉, 회의록, 회의자료 등)
2	국민 의례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① 사회자가 진행
3	의장 인사	인사말 (최근 학생들의 관심사, 중요한 학생회 일, 학생회를 믿고 협조한 대의원(학생들에 대한 감사 등))	① 의장은 중요한 보고 사항을 보고한다. ② 본 회의 시 핵심 사항을 알려주며 당부의 말을 전한다. ③ 모든 대의원(학급 학생)이 의안 해결을 위해 자연스런 분위기 속에서 적극 참여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인사말을 한다.
4	평가 · 보고	지난 회 회의록 낭독, 의안 실천 결과보고, 각 부서별 보고 등	① 의장이 진행 ② 서기는 지난 회 회의록을 보고한다. 보고된 회의록은 수정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한다. ③ 지난 회에 결의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된 부서장 및 담당자는 반성을 포함하여 평가 차원의 보고를 한다. ④ 기타 운영위원의 반성 및 평가, 보고까지를 포함하여 의장이 총평한다. ※ 필요시 의장이 대의원(학급학생) 다수의 동의를 받아 간략히 구두 보고하거나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다.
5	의안 보고 및 채택	의안 보고 및 채택	① 학생회운영위원회, 대의원회에서 채택된 의안을 보고한다. ② 학교에서 연간 계획에 의거해서 의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③ 의원들로부터 의안 동의(同議)가 있으면 재청을 받아 채택한다. ④ 의안 제안자의 설명을 듣는다. 제안자는 의안의 중요성과 의안과 관련된 실태, 바라는 바 등을 설명한다. 제안자는 찬성, 반대 입장을 고려하여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학교에서 제시한 의안일 경우 해당 학생회 부서장 혹은 의장이 제안 설명을 한다. ⑤ 의안은 절실한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실천 가능한 것을 채택한다. ⑥ 의장은 적절하지 못하게 동의(動議)된 안건은 기타 토의나 건의 사항으로 분류하여 논의한다.

순서	단계	진행구조	진행요령
6	의안 심의	채택된 의안 심의	① 의장이 의안을 상정한다.(제1호 의안, 제2호 의안 등) ② 의안 제안자의 설명을 듣는다. ③ 질의 및 응답을 한다. ④ 의안을 충분히 토론한다. ⑤ 대의원들에게 동의를 구한 후 토론을 종결한다. ⑥ 표결 후 결과를 발표한다.(의장 의사봉 3타) ※의장은 찬반 간에 평등한 발언 기회와 충분한 토의시간을 주어야 한다. 자료 부족으로 사실 판단이 어려울 경우 잠시 정화하고 사실을 확인하거나, 지도교사에게 자문을 구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 표결은 사안에 따라 대의원들에게 의사를 물어 거수, 기립, 비밀투표 등으로 할 수 있다.
7	기타 토의	기타 사항을 토의	① 본 회의 의안과 관련되지 않은, 시급히 토의할 사항을 처리한다. ②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 대의원 1/3 이상 발의가 있어야 된다.
8	건의	건의 사항	① 시급한 문제를 건의하여 해결할 사항을 다룬다. ② 필요시, 담당교사와 학교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
9	회의록 낭독	보고 및 결의된 사항 낭독	① 서기는 회의와 관련된 일체의 기록을 책임지며, 본 회의에서 보고되었거나 결의된 사항을 간략히 보고하여 대의원들에게 승인을 받는다.
10	도움말	지도교사의 도움말	① 필요 시 지도교사는 회의 진행, 의사결정방법, 기타사항 등에 대해 도움말을 할 수 있다.
11	교가 제창	제창	① 교가 제창
12	폐회 선언	이상으로 제 ()회 학생대의원회 (학급회)를 마치겠습니다.	① 의장이 폐회를 선언한다.(의사봉 3타) ② 대의원(학급 학생) 모두 박수로 마친다.

예시 5

학급회 회의록

출석 인원	서기	부의장	의장	회의 장소
명				
회의 일시	〇〇년 〇월 〇일		회의 시간	14:00 ~ 15:00
토의안건	▶ 1호 의안: ▶ 2호 의안:			
제안설명	▶ 1호 의안(〇〇〇 제안자 제안 설명) ▶ 2호 의안(〇〇〇 제안자 제안 설명)			
토의내용	▶ 1호 의안 ▶ 2호 의안			
질의내용				
결의내용	▶ 1호 의안 : ▶ 2호 의안 :			
건의 · 기타사항	① ② ③ ④ ⑤			

Tip 학급규칙의 운영방법과 절차

순서	학급 규칙 제정 절차	시기	비고
1	학급규칙 제정의 필요성 연수 - 학급규칙 제정 시 고려해야 할 점	3. 12	담임교사 (총 30명)
2	학급 상황 파악	3. 15	1주일 간
3	학급규칙(안) 작성 - 학급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교사와 학생이 함께 참여	3. 19	
4	학급규칙 제정 - 학급 자치회의에서 결정	3. 26	
5	학생자치지원부에 제출 및 검토 - 학교규칙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는 지 검토	3. 29	
6	학급규칙 제정 알림 -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림	4. 2	
7	학급규칙 중간 수정 점검 - 학급규칙 운영 후, 발생하는 문제점 보완 - 학급회의에서 논의하여 수정 및 확정	5. 1	
8	수정된 학급규칙 알림 -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림	5. 7	

Tip 학급규칙 실천을 위한 주체별 역할

▶ 학생

- 구성원의 참여와 합의로 제정된 학급규칙은 지켜지도록 노력한다.
- 학급규칙에 대한 모니터링과 의견 제시를 통해 수정 보완하여 나간다.
- 학급규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서로 돕는다.

▶ 교사

- 제정된 학급규칙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리고 교실에도 게시한다.
- 학급규칙을 모든 학생에게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 교사가 먼저 학급규칙을 지키는 모범을 보인다.
- 학부모와 협조하여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학급규칙의 준수에 대한 평가(체크리스트 등)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 개인이 원하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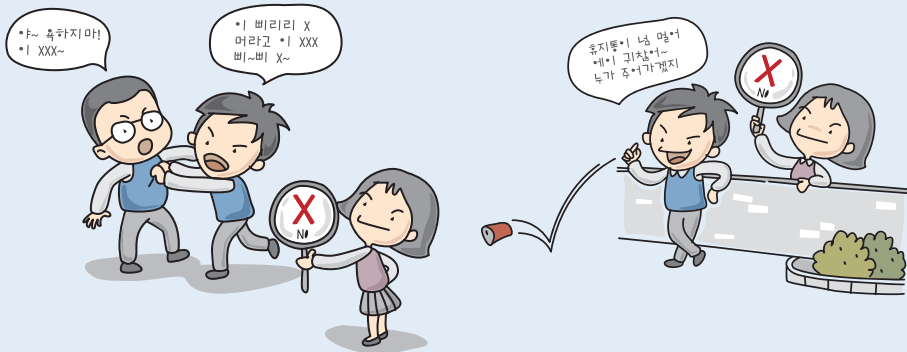
▶ 학부모

- 학생과 담임교사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 학부모도 학급규칙을 지켜 모범을 보인다.

4 - Clean + 2 운동

4 - Clean(욕설하지 않기, 휴지 버리지 않기, 흡연하지 않기, 휴대폰 사용 않기)
+ 2 운동(수업시간 집중하기, 수업시간 잘 지키기)

- 상벌점제와 연계하여 지도 : 우수학생 상점, 부진학생 벌점 부여
- 시종시간 알리미 학생들이 시작종이 울린 후 학생들을 자율적으로 계도
- 등교 후 휴대폰은 휴대폰 가방에 수거하여 귀가 시 돌려주어 수업 집중도 향상
- 4 - Clean + 2 운동 배너를 복도에 설치(8곳)
- 4 - Clean + 2 운동 정착을 위한 캠페인 활동 : 매주 수요일
- 4 - Clean + 2 운동 실천 다짐대회 및 소감문 쓰기(다짐대회 5회, 소감문쓰기 1회)



- 4-Clean+2 운동의 지속적인 실천 및 지도를 통해 기본생활 습관의 인지화 · 내면화 · 행동화
○○중학교는 학년 초에 학생회에서 4-클린(욕설하지 않기, 휴지 버리지 않기, 흡연하지 않기, 휴대폰 사용 않기) +2운동(수업시간 잘 지키기, 수업시간 집중하기)의 실천을 결의하고, 1년 동안 지속적/학생회 중심으로 노력한 결과 스마트한 학교 분위기 조성에 좋은 결실을 거둔 바 있다.

특히 이 학교는 교내 곳곳에 4-클린+2 운동 관련 배너를 설치하여 학생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자율선도부 학생들로 하여금 시작종이 울리면 호루라기를 불게 하여 교실에 늦게 들어가는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 시켰고, 담임교사에게 휴대폰 수거 가방을 나누어 주어 교내에서의 휴대폰 사용을 지도 하였으며, 상벌점제를 적절히 활용하여 4-클린+2 운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지도하여 바람직한 학교 문화 형성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 학교 ○○○교장은 학교 특색사업인 4-클린+2 운동을 통해 학생들의 의식과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신학년도에도 4-클린+2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학교 문화를 선도하고, 명문학교의 전통을 계승하겠다고 다짐하였다.



4-클린+2 운동 관련 배너



4-클린+2운동 등교길 캠페인 활동

사례 2

인천 ○○중 학급 평화규칙 11조(2학년 4반)

- 첫 째, 따돌림 없는 화목한 반을 만들자.
- 둘 째, 친구를 돕고 칭찬하여 나쁜 짓을 말리자.
- 셋 째,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상처주는 말은 하지 말자.
- 넷 째, 폭력을 쓰지 않고 대화로 해결하자.
- 다섯째, 학교 물품은 아껴쓰자.
- 여섯째, 친구의 물건은 반드시 돌려주자.
- 일곱째, 청소를 열심히 해 깨끗한 반을 만들자.
- 여덟째, 같이 밥 먹고 같이 운동해 건강해지자.
- 아홉째, 친구들이 싫어하는 장난은 괴롭힘임을 알자.
- 열 째, 준비물, 숙제 등 수업 준비를 잘 알자.
- 열한째, 선생님께 예의를 갖추고 솔직하자.

사례 3**서울 ○○중 열가지 학급규칙(3학년 6반)**

- 첫 째, 복도에서 뛰어 다니지 말자.
- 둘 째, 학교 내에서 명찰을 달고 다니자.
- 셋 째, 교실 내에서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 넷 째, 용의 복장을 단정히 하자
- 다섯째, 머리를 단정히 하자.
- 여섯째, 싸우지 말자.
- 일곱째, 교실 내에서 실내화를 신고 다니자.
- 여덟째, 교실 내에서 침을 뱉지 말자.
- 아홉째, 종치기 전에 제자리에 앉아 있자.
- 열 째, 언행을 바르게 하자.

사례 4**안산○○고 학급 실천덕목(3학년 6반)**

- 첫 째, 벌금을 빨리 내자.
- 둘 째, 실외화는 실외에서 신자.
- 셋 째, 18 : 45부터 야자시작하자.
- 넷 째, 청소는 열심히 하자(안하면 벌금)
- 다섯째, 출입가능시간에만 출입하자(~7 : 10, 7 : 20, 7 : 30~)
- 여섯째, 다른 반 친구의 출입을 막자.(학습 분위기 저해)
- 일곱째, 싸우지 말자.(막말하지 않기)
- 여덟째, 욕설하지 말자.
- 아홉째, 환기시간을 가지자.(7시, 12시, 청소시간, 18 : 30)
- 열 째, 자면 깨워주자.(깨우면 화내지 말자)

1. 등교 시간

- 일과 시작 시간 전에 학교에 등교하여 오늘 할 일을 점검한다.
- 급한 일로 등교가 불가능하거나 늦을 경우 반드시 담임교사에게 사정을 알린다.

2. 자습 활동

- 자율학습 중 자리 이동(화장실 사용, 친구에게 물어보기 등)에 따른 타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한다.
- 자율학습 때 전자기기는 학습 목적만을 위해 사용하며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 급우의 자습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3. 수업시간 중

- 선생님이 수업하러 들어오시기 전까지 수업 준비를 마친다.
- 교육활동에 참여토록 노력하며, 타인의 학습활동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잘 모르는 것은 선생님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4. 급식시간

- 급식당번은 급식복장을 잘 착용하고, 급식기구를 조용히 운반한다.
- 질서를 잘 지켜 배식을 받으며, 식사 시 돌아다니며 먹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는다.
- 즐겁게 식사하되, 음식물을 입에 넣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5. 교실 및 실내생활

- 특별한 이유 없이 실내에서 뛰거나 고성을 내지 않도록 한다.

6. 친구간의 관계

- 급우끼리 사이좋게 협동하며 지낸다.
-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갈등을 대화로 풀 수 있도록 노력한다.

7. 용의 및 복장

- 용의 복장은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 신발은 학교생활규정에 지정되어 있거나, 학교생활에 편리한 신발을 착용한다.
- 학교 건물 밖에서는 실외화를, 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하도록 한다.

8. 기타

- 급우의 선행을 알게 되거나 급우가 위험에 처한 사실을 알면 담임교사에게 알린다.
(무기명 문자 등을 이용)
- 세부 실천 규칙(상점 · 벌점)은 학급회의에서 별도로 정하여 실천한다.

Tip '법사랑 사이버랜드'를 활용한 학급헌법 만들기

- 법사랑 사이버랜드(<http://cyberland.lawncorder.go.kr>)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법체험 테마파크로서 학급헌법(학교규칙의 한 유형)만들기를 지원하는 유용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 메뉴 : [사이버랜드] → [체험 법세상] → [우리 헌법 만들기]
- 학급헌법 만들기 과정별 내용을 체험형으로 쉽게 안내하고 있으며, 다른 학급헌법을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탑재하고 있다. 또한, 수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수업지도안'도 제공된다.
※ 지도안 다운로드 : 사이버랜드 / 나눔과 공감 / 함께하는 세상 게시판
※ 지도안 책자 신청 : 이메일 신청(five-nom@hanmail.net)
- 학급 생활에 필요한 중요한 약속들을 학생들과 담임선생님이 토론을 통해 스스로 정하고 준수함으로써 즐겁고 행복한 학급을 만들 수 있다.



5. 학교규칙 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

❏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9호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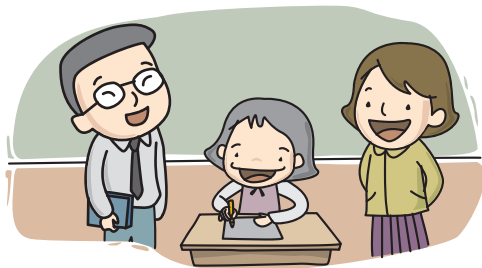
9. 학교규칙 개정절차

❏ 의의

- 학교규칙의 개정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학교규칙이 타당성 있게 제·개정 되고 실효성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돕는다.
- 학생, 학부모, 교사가 제·개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율준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고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 적용시 유의점

- 가급적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개정절차와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7~9호)’ 개정절차를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한다.
- 제·개정절차에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수렴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 특히 운영 주체인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칙 개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되 학생대표, 학부모 대표, 교사 대표가 균형있게 배정되도록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학교규칙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학교규칙'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규칙'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 ① 본교의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규칙 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또는 교감)하며, 위원회의 과반수는 학생회 대표 및 학부모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 ③ 본교는 교감, 생활지도부장, 교무부장, 교내지도계, 학생회장, 학생자치법정부장, 자율부장, 학부모회장, 학부모회 부회장 등 9 명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회 운영)

-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합의에 이르지 아니할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개정안 발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규칙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기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의 요청

6. 생활평점제(그린마일리지, 상·벌점제)

의의

- 학생들이 학교규칙을 준수하고 기본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생활평점제를 운영할 수 있다.
- 생활평점의 항목과 운영방안을 정하는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규칙과 약속이 살아 숨 쉬는 민주적인 학교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

운영 원칙

-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상·벌점 운영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학교자체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한다. 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문자발송서비스 등을 활용할 때에는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확보한다.
- 과벌점 학생에게 징계를 할 경우에는 생활평점제 규칙 및 선도규칙에 징계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단, 생활평점제의 운영 목적은 기초생활습관과 인성지도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선도위원회 회부 전까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할 수 있다.



운영 절차

단 계	주요 실천 내용
준비	▶ 생활평점제 규칙 제 · 개정 (상 · 벌점 항목 및 배점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 ▶ 교내 온라인 시스템 구축, 교원 시스템 등록 및 권한 부여 ▶ 상 · 벌점 시행에 필요한 소요 품목(예: 카드 등) 준비 ▶ 생활평점제 운영 동의서 발송 및 수합
연수 및 홍보	▶ 교사,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상 · 벌점 내용 교육 (학기 초, 개정 직후) ▶ 학교(학급)홈페이지, 가정통신문 홍보, 규칙집 제작 홍보 ▶ 생활평점제 시행 홍보(시범운영) 기간 운영
시행	▶ 전 교원 상 · 벌 점수 입력 또는 선정된 담당자에 의한 입력 ▶ 학생별 학급별 상 · 벌점 누계 통계처리 ▶ 이의 신청 및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학생 선도 및 표창	▶ 우수 학생에 대한 포상 및 선행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 ▶ 과벌점 학생은 선도위원회 등을 통해 징계 부여

적용의 실제

(1) 준비 단계

- 상점 위주의 생활평점제 규칙을 제 · 개정한다.
- 상점과 벌점의 배당 점수를 정할 때 편차를 심하게 두지 않는다.
- 벌점을 상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행 시 벌점을 차감하여 준다.

Tip 상 · 벌점 항목 선정

- ① 상 · 벌점 항목은 학생들의 기본 생활습관과 관련된 항목으로 정한다. 단, 중대한 비행(도박, 부정행위, 교사에게 폭력, 형사입건 등)은 선도위원회에서 징계하고 학교폭력(폭행, 금품갈취, 성폭력, 따돌림 포함 14가지) 사안은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칙에 의해 조치하도록 한다.
- ② 상 · 벌점 항목은 가급적 비슷한 갯수로 정하고 벌점항목이 상점항목보다 지나치게 많지 않도록 한다.
- ③ 교내 청소봉사,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교통안전 도우미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 벌점을 삭감할 수 있는 상쇄제도를 함께 운영을 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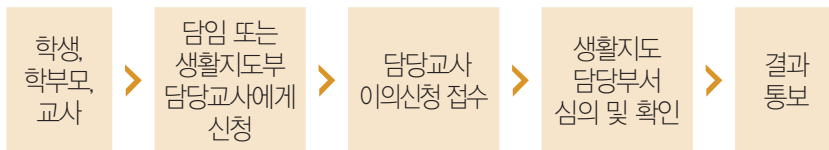
(2) 연수 및 홍보 단계

- 상 · 벌점 규칙에 대해 학교(학급)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 등으로 자세히 안내한다.
- 상 · 벌점 부여 절차 및 규칙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여 운영상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 생활평점제 시범 운영 기간을 두고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3) 시행 단계

- 가급적 상점 부여를 통한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고 처벌보다는 선도에 중점을 둔다.
- 모든 교사가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점수를 부여한다.
- 이중처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 문제 행동 발생 시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할 때에는 가급적 벌점을 주지 않는다.

-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이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



(4) 선도 및 표창 단계

- 무벌점 및 상점 상위 학생은 각종 모범학생 표창에 추천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 학생자치법정, 학교내 대안교실(Wee 클래스, 성찰교실 등) 등 관련 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 생활평점제는 일년 단위로 운영할 것을 권장한다.

❖ 적용상의 유의점

- 교사는 학생의 상·벌점 해당 행위에 대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상·벌점을 부과하도록 한다.
- 다양한 상점제를 운영하여 긍정적 행동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Tip 생활평점제 Q & A

Q1. 동일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 중복으로 벌점을 줄 수 있는가요?

A1. 중복해서 벌점을 줄 수 있는 경우는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이행하는 경우, 실내에서 소란 및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는 행위 등이며 중복해서 줄 수 없는 경우는 단기에 시정할 수 없는 염색 등입니다.

Q2. 생활평점 누적 점수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A2. 학기별, 학년별 등 해당 단위학교의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를 통하여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학년도를 기준으로 1년 동안 시행)

Q3. 생활평점은 교사만 부여할 수 있나요?

A3. 경우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회(선도부 등)에서 상·벌점을 부여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급회의나 전체 학생회의에서 선행학생을 선정하여 상점을 부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례 1

상·벌점 누적에 따른 학생지도 계획(부산 ○○중학교)

1) 상점 누적 관리

가) 상점 관리

① (상점부여) 상점기준표에 따라 상점을 부여



② 한 학기당 상점 누계 15점 이상 20점 미만인 학생

→ 도서상품권 등 상품 수여



③ 한 학기당 상점 누계 20점 이상인 학생

→ 교내 모범상 수상, 교내·외 장학금 우선 추천



④ 학교생활기록부 행동발달상황란 예시 내용기재

→ “준법정신이 투철하고 성실함이 돋보이며 모범적인 학생임” 등

나) 상점 누적에 따른 벌점 상쇄

① (벌점부여) 학교 내·외에서 문제 행동 발생 시 즉시 현장 지도

→ 상황에 따른 적합한 행동 부과 / 벌점 적용



② 벌점 누계 15점 이상일 경우

→ 생활지도부 선생님께 활동 내용을 지도 받음

→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벌점상쇄 활동을 실시



③ 활동 종료 후 벌점상쇄서에 벌점, 날짜, 활동내용을 기입한 후

확인 사인을 받음



④ 벌점상쇄서를 생활지도부 기획선생님께 제출



⑤ 학년말 기준으로 벌점을 0점으로 미 상쇄시,

학교생활기록부 행동발달상황란 예시 내용 기재

→ “책임감과 성실성이 다소 부족함, 준법정신이 다소 부족함” 등

2) 과별점학생 선도절차

(당해 연도 기준)

1단계 학교봉사 3일	벌점 20점을 초과한 학생 → 학부모에게 통지 → 징계 후 벌점 20점 상쇄
2단계 학교봉사 5일	'학교 내 봉사 3일'을 이수 후, 다시 20점을 초과한 학생 → 징계 후 벌점
3단계 사회봉사 5일	학교 내 봉사를 2회 이수한 뒤, 다시 20점을 초과한 학생 → 학생선도규정에 의거 '사회봉사 5일'의 징계 & 학부모에게 통지 및 내교상담 → 징계 후 벌점 20점 상쇄
4단계 특별교육 7일	상·벌점 기준에 의해 사회봉사를 이수한 뒤, 다시 20점을 초과한 학생 → 학생선도규정에 의거 '특별교육 7일'의 징계 & 학부모에게 통지 및 내교상담 → 징계 후 벌점 20점 상쇄
5단계 출석정지 5~10일	상·벌점 기준에 의해 특별교육을 이수한 뒤, 다시 20점을 초과한 학생 → 학생선도규정에 의거 '출석정지 5~10일'의 징계 & 학부모에게 통지 및 내교상담 → 징계 후 벌점 20점 상쇄
6단계 전학 및 대안학교 권고	5단계까지의 징계가 비효과적이고, 더 이상의 학교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학부모에게 통지 & 학생선도규정에 의거하여 전학 및 대안학교 권고

3) 적용상의 유의점

가) 방침

- ① 상·벌점은 상·벌점 관리프로그램 또는 관리카드에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관리한다.
- ② 전체 교사가 참여하여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
- ③ 상·벌점은 상·벌점 기준표에 의거하여 부여함으로써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 ④ 학생들이 '상·벌점제운영에관한규정'의 기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사전지도를 철저히 한다.
- ⑤ 공정하고 정확한 상·벌점제 정착을 위해 교사, 학부모 및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방법, 내용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수정·보완한다.
- ⑥ 학생들의 준법정신과 질서 의식, 봉사 정신을 함양하도록 지도한다.

나) 상점

- ① 자발적인 선행을 한 학생에게는 상점을 부여하고, 일정한 점수에 도달하면 시상한다.
- ② 상점으로 벌점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청소당번이 청소를 하는 경우와 같이 맡은 일을 수행하거나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는 경우는 상점 부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벌점

- ① 벌점부과로 지적된 행동은 즉시 수정하도록 한다.
- ② 벌점부과로 지적된 행동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학생의 보호자를 내교하도록 하여 담임교사 및 생활지도부 담당교사와 상담 및 지도를 받도록 한다.
- ③ 위 항의 지도조치에도 불구하고, 행동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하여 학생선도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④ 벌점이 누적된 학생은 벌점 상쇄 절차에 따라 벌점을 상쇄한다.
- ⑤ 벌점이 20점을 초과할 경우 학생선도규정에 따라 징계한다.
- ⑥ 벌점기준표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학생선도규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⑦ 누적된 벌점이 10점을 초과할 경우, 학교 내·외의 장학금 및 표창장 수여 대상자 추천에서 배제할 수 있다.

라) 벌점상쇄

- ① 해당학년도에 받은 벌점은 해당 학년도 내에 0점으로 상쇄하여야 한다.
- ② 위 항과는 별도로 생활지도부장이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벌점상쇄기간을 특별히 지정할 수 있으며, 벌점누적학생은 그 기간 내에 벌점을 상쇄하여야 한다.
- ③ 벌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상쇄할 수 있다.
 - ㉠ 상점으로 상쇄
 - ㉡ 환경정화활동(시간 당 1점) / 과제물수행활동(1편 당 1점) / 극기수련활동 / 정서함양활동
 - ㉢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 ④ 벌점 상쇄를 위한 일체의 활동을 이수할 때, 해당 학생은 규정된 용모와 복장을 갖추도록 한다.
- ⑤ 해당 학년도에 벌점을 모두 상쇄하지 않을 경우 누적 벌점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의 행동발달상황란에 서술식으로 기록한다.
- ⑥ 위 항의 생활기록부 기록이 확정되기 이전, 해당 학생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벌점상쇄의 기회를 준다.
- ⑦ 해당 학년도의 벌점을 모두 상쇄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벌점은 소멸된다.

마) 상·벌점 열람

- ① 학생 개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른 학생의 열람은 제한하도록 한다.
- ② 생활지도부장 및 기획, 학년부장은 학생 생활지도를 위해 열람할 수 있다.
- ③ 각 학급담임교사는 해당 학급 학생의 상·벌점을 열람할 수 있다.

4) 기대효과

- 가) 교사와 학생간의 무리한 생활지도에 따른 감정적인 마찰의 감소로 학교 구성원들의 활기차고 즐거운 학교생활 정착
- 나) 생활평점제 시스템을 통한 학생들의 자율성과 준법정신 함양
- 다) 상·벌점 프로그램을 통한 단위학교 생활지도의 효율성과 책무성 증대
- 라) 학생들의 생활태도에 대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학생지도에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생활지도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 마) 네트워크를 통한 교사와 학부모간의 정보교환으로 학생 생활지도에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1 상점기준표

구분	항목	세 부 사 항	상점	비고
개 인	1	평소 예의가 바르고 언행에 있어 매우 모범인 학생	2	예절
	2	환경미화, 각종 대회 및 학급행사시 솔선수범하여 봉사한 학생	2	봉사
	3	교내·외에서 선행을 하여 타의 모범이 됨.	1	선행
	4	독서를 많이 하는 학생(월 20권 이상) - 사서교사	3	독서
	5	독서를 많이 하는 학생(월 10권 이상) - 사서교사	2	독서
	6	평소 수업태도가 좋으며, 건전한 면학 분위기 조성에 앞장선 학생	1	면학
	7	분실물을 찾아주거나 습득물을 신고한 학생	1	신고
	8	대외 봉사활동에 헌신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학생 (학기별-담당교사)	2	봉사
	9	선행·미담으로 추천된 학생	2	선행
	10	몸이 불편한 친구를 도와준 학생	2	선행
	11	학생의 자발적 청소활동과 교사의 임의 청소임무 부여 시 열심히 활동한 학생	1	봉사
	12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특별히 많이 낸 학생	2	선행
	13	학생 안전사고 및 폭력, 금품갈취 관련 사고를 신고한 학생	2	신고
	14	규정 위반 사실을 제보, 신고한 학생	2	신고
	15	흡연, 절도 등 중대한 교칙위반을 신고 한 학생	2	신고
	16	주변활동을 열심히 했을 때(1주일, 담임)	1	봉사
	17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소화기 관리를 잘 했을 때 (1주일, 담임, 환경부장)	1	책임
	18	학급 게시물 관리, 커튼 관리, 진공청소기 관리를 잘 했을 때 (1주일, 담임, 미화부장)	1	책임
	19	생활부급장(1학년), 자율정화부(1학년), 학습부의 활동을 잘 했을 때	1	책임
	20	준비중에 교실 입실한 학생(1개월, 담임)	2	질서
	21	꼭지상담에서 수업태도 및 칭찬받을 사람으로 추천된 학생 (담임)	2	태도
	22	빈 그릇 운동 카드에 도장이 연속적으로 5개 찍은 학생 (1주일, 담임)	1	태도
	23	각종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 (친구사랑 주간행사, 공모전 등등) - 담임	2	태도

구분	항목	세 부 사 항	상점	비고
학 급 전 체	24	용의복장검사 우수반	1	협동
	25	환경미화심사 우수반	1	협동
	26	생활평점제 우수반	1	협동
	27	생활영어활용인증제와 필수단어인증시험 우수반	1	면학
	28	전체모임, 체육대회, 학예제 등에서 질서를 잘 지키는 반	1	질서
	29	다독반	1	독서
	30	성적향상반	1	면학

2 별점기준표

영역	항목	세 부 사 항	별점
준법	1	08 : 21 이후 등교	1
	2	무단결석, 무단외출, 무단결과, 무단이탈	2
	3	학교행사, 단체 활동, 기타 수업활동 무단으로 불참	2
수업 태도	4	아침 자습 태도 불량	1
	5	수업시작 이후 입실(무단)	1
	6	수업태도 불량(수면행위, 준비물 미 지참, 음식물 취식 행위 등)	1
	7	수업 분위기 저해행위(소란 방해)	1
	8	수업 중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MP3)사용행위(휴대전화 사용 규정 적용)	2
용의 복장	9	수업 중 만화, 잡지, 소설 등 수업과 무관한 것을 보는 행위	1
	10	실내화 착용 위반, 등·하교 시 슬리퍼 착용	1
	11	교복변형(짧은 치마, 바지 줄임, 상의 줄임 등), 교복, 조끼 미착용	1
	12	두발 규정위반 (염색, 파마, 코팅, 길이, 유행머리, 규정 이외의 두발형태 등)	1
	13	신발 규정위반	1
	14	장신구(목걸이, 귀고리, 반지, 큰 머리핀 등), 피어싱, 칼라렌즈	1
	15	얼굴 색조 화장 및 매니큐어, 무스, 스프레이	1
	16	명찰 미착용 및 명찰 훼손(스티커, 낙서) 및 도용	1
	17	소형 가방, 핸드백, 끈 가방, 책가방 미소지	1
교내 생활	18	욕설, 껌, 침 뱉는 행위	2
	19	음료수/빙과류/빵/과자 등 음식물 이동시 시식 및 버릴 때	1
	20	실내화를 구겨 신고 다닐 때나 교직원 실내화를 신는 행위	1
	21	실내화를 신고 운동장에 나가거나, 실외화를 신고 교실로 들어올 때	1
	22	정수기 사용 위반 행위	1
	23	정당한 사유 없이 타 학급, 하급생 교실 무단 입실 행위	1
	24	이성 간 과도한 신체접촉	2

영역	항목	세 부 사 항	벌점
교내 생활	25	물·분필·휴지 등으로 장난 및 쓰레기 투기, 고성방가, 실내 공놀이	1
	26	학교부착물 임의 철거 및 시설물 훼손(변상)	2
	27	책, 걸상, 유리창, 형광등, 교탁 등 고의적 실내·외 각종 기물 파손행위(변상)	3
	28	책, 걸상, 학교 벽 낙서하는 행위	2
	29	불량CD·서적소지 및 불량 동영상 시청	3
	30	급식질서불량(순서 지키지 않는 행위, 식판 던져놓는 행위 등)	3
	31	급식질서불량(잔반 없는 날' 잔반 남기는 행위 등)	1
	32	라이터 소지 및 흥기, 절단기 등 위험한 물건 소지	3
	33	담배, 흡연행위 및 흡연 의심행위(CO ₂ 측정기 수치 2 이상)	5
	34	휴대전화문자, 인터넷상 인격모독 행위, 불법행위(고의적, 악의적 댓글, 허위사실 유포 등)	5
	35	약한 학생을 대상으로 따돌림 행위를 했을 경우	3
	36	교직원 시설물 이용	1
	37	교과서를 버리거나, 파손하는 행위	2
	38	카드, 화투, 돈치기 등 사행행위 적발	2
	39	드라이기, 머리 인두기 등 교실에서 사용	2
	40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단순한 폭력행위(심한 상처 없는 정도)	3
	41	화장실 외 배설행위	5
	42	준비종이 끝났을 때 돌아다니는 행위	1
	43	쪽지상당, 학교폭력설문지에 지적당하는 학생	1
	44	주변활동이 미흡할 때(담임)	1
	45	책을 한 달 이상 연체하거나 도서관 책을 훼손하는 학생	2
학급 전체	46	이동수업 시, 방과 후 문단속을 하지 않았을 경우	1
	47	이동수업 시, 방과 후 소등, 선풍기, 멀티 캡을 끄지 않았을 경우	1
교외 생활	48	노상방뇨, 고성방가, 휴지, 오물 함부로 버리는 행위	2
	49	학생 출입금지 구역 출입(유흥주점 등), 음주, 흡연 등	5
	50	행인농락, 희롱	5
기타	51	교사의 정당한 지시 불응	6
	52	지도교사기만(거짓말, 허위진술 등)	5

7. 교육벌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등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 … (이하 생략)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2011. 3. 18.)에 따라 신체 또는 도구를 이용한 직접적 체벌은 금지된다. 다만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벌의 일종으로서 교사가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교육적 훈육은 허용된다.

교육벌의 개념

- 벌이란 일정한 법이익의 보호나 질서유지를 위하여 위법한 행위를 한 자에게 고통을 수반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 때 고통에는 정신적·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재산상 또는 신분상의 불이익이 포함된다.
- 교육벌은 학교에서 학습권과 교육권의 보호 및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벌로서, 징계벌은 물론이고, 교육상 행해지는 여러가지 불이익 처분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교육벌은 다음 설명과 같이 학생 생활지도의 한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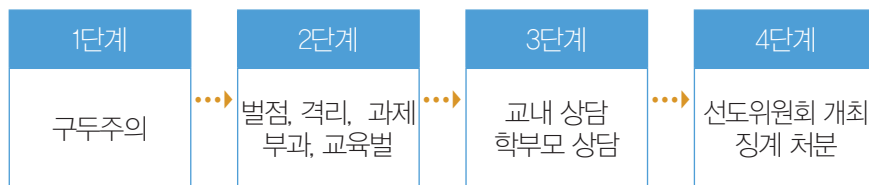
- 학생 생활지도 수단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우선, 인본주의적 교육관에 근거한 방법으로 별이 아닌 지원행위로 상담, 연수, 칭찬 및 상점제, 분노조정 등의 교육훈련이 있다. 둘째는 행동주의 교육이론에 근거한 방법으로 별의 성격이 있는 훈육·훈계 방법이다. 셋째는 교육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별이다.



※ 고통의 종류가 정신적인 것인지 신체적인 것인지는 교육벌을 정의하는데 중요하지 않다. 학생의 교정이라는 교육적 목적이 확실한지 여부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등 상황에 따른 즉각적 조치의 필요성, 별 이후에 행해지는 추후 지도활동 등에 따라 교사의 전문적 판단에 근거하여 적절한 단계의 교육벌을 가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교실 뒤 서 있기, 운동장 걷기, 팔굽혀 펴기 등과 같은 교육적 훈육은 학급별 신체적·정신적 발달 단계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범위와 수준 등을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칙으로 결정 하도록 한다.
- 학생 지도방법의 원칙과 절차는 학칙으로 정하되 급급적 학생에게 직접 적 불이익이 적은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훈육 훈계의 방법을 실시할 경우 징벌적 조치에 대한 강도와 지속시간 은 지도교사가 정하되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고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실시한다.
-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미리 확인한 후 시행하도록 한다.

교육상황별 교육별 분류

(1) 정규교육과정 중 지도방법

- ① 문제 상황 분리형 : 수업 중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생을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즉각적인 제지뿐만 아니라 학생 스스로 진정효과 달성

● 몸으로 나무 만들기

- 문제의 종류에 따라 나무모양 자세를 달리 정해 상황발생 시 학생으로 하여금 해당 자세를 취하게 함으로써 내적 반성과 각성효과를 유도

● 생각하는 책상

- 학생들로 하여금 교실 내에 분리되는 공간(교실 뒤편에 마련된 생각하는 책상 3~4개)에서 일정시간 감정 통제의 시간을 갖도록 유도

● 성찰교실

- 별도 교실에 분리된 공간을 마련하여 일정시간 감정 통제를 하도록 유도 (상담교사 배치가능)

- ② 자유 시간 이용형 : 자유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문제 상황 및 교우들에 대한 사고시간을 갖도록 하는 과정에서 교정효과 달성

● 사과 편지

- 학생 간 괴롭힘 등이 발생했을 때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의 얼굴을 그리고 하단에 친구의 장점과 함께 사과편지를 쓰도록 유도

● 사랑의 화초 가꾸기

- 학기 초에 교실 한편에 실내정원을 설치한 후, 문제 상황 발생 시 해당 학생에게 화초 관리(관찰기록장 작성 · 물주기 등)를 맡김으로써 책임감 고양 및 관리기간 중 감정 통제가 될 수 있도록 유도

● 반성캠페인

-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캠페인성 문구(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맙시다, 수업시간에 떠들지 맙시다. 등)를 들고 쉬는 시간 혹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캠페인 활동 전개
- 캠페인 활동시간으로 점심시간 등을 할애해야 되므로 감정조절 훈련 및 타 학생에게도 교육적 효과 발생

● 선생님(친구) 10명에게 서명 받아오기

-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기술하게 한 후, 기술한 내용에 대하여 선생님(혹은 친구)에게 서명을 받아오도록 유도
- 문제행동의 경중에 따라 서명인의 숫자 혹은 서명을 받아와야 하는 기한을 조절하며, 문제행동 지속 시 학부모 상담 자료로 활용 가능

● 타임아웃제

- 자유로운 생활을 선호하는 학생특성에 따라 학생들에게 자유 시간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시킴으로써 문제행동 감소효과 발생

③ 체력단련형 :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종목 혹은 각종 스포츠 기초 동작 학습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즉각적인 교정 및 체력단련 효과 달성

● 학생건강체력평가(PAPS)를 적용한 체력 향상

- 문제행동 발생 시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종목인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등을 부여함으로써 체력단련과 함께 교정효과 달성

● 스포츠 기초동작 학습

- 문제행동에 따라 목표 수치를 달리 정하여 팔굽혀펴기, 달리기 등 각종 체육·스포츠 기초 동작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체력단련 및 교정효과 달성

● 바른 자세(요가, 단전호흡 등) 지도

- 문제행동에 따라 요가, 단전호흡 등의 자세를 매칭하여 활동하도록 함으로써 자세교정 및 감정억제 효과 달성

(2) 방과 후 지도방법

① 자기성찰 및 상담형 : 학생상담 및 자기성찰 시간을 갖도록 함으로써 문제 상황에 대한 인지 및 교정효과 달성

● 적응력 향상 방과 후 교실

- 부적응 학생을 적정 수(7~10명) 선정한 후 학부모·학생과 충분한 상담 실시 및 동의를 얻어 적응력 향상 방과 후 교실을 운영
- 학급단위로 실시하기보다 학교단위로 실시하며, 부적응 학생 수에 따라 여러 반을 운영하되 공동 활동도 기획 가능

●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실

- 학습을 거부하는 학생에게 학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내의 공간을 확보한 후, 상담교사를 배치하여 학습 외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공

● 학급친구들의 편지쓰기

- 문제행동에 대한 학생 스스로의 성찰과 함께 같은 학급친구들로 하여금 해당학생에게 편지(발생한 행동의 문제점, 해당학생의 장점 등)를 쓰게 함으로써 해당학생뿐만 아니라 동 학급 교우들도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 및 자기성찰을 유도

② 학습형 : 문제행동의 경중에 따라 다양한 학습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교정효과 및 학습효과 동시 달성

● 자기 주도적 학습력 향상법

- 문제 상황 발생 시, 문제행동에 대해 해당학생에게 방과 후 학습활동을 부여하되 학생은 반드시 해결 후 하교하도록 지도
- 이때 중요한 것은 즉흥적 과제가 아닌 학생의 특성과약을 통해 학생에게 적합하고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의 적정수준 과제를 제시

● 우수 독후감 펜글씨 쓰기

- 독서교육지원시스템에서 권장하는 도서 목록 등을 바탕으로 학생의 문제행동과 유사한 독후감을 미리 선정한 후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내용을 발췌하여 펜글씨 교본을 제작
- 문제행동 발생 시, 펜글씨 교본을 쓰면서 감정조절 및 자기성찰의 시간 부여

- **좋은 글귀(명심보감 등) 쓰면서 마음 다스리기**

- 문제 상황 발생 시, 정규 교육과정의 학습차원이 아닌 인성교육 차원에서 좋은 글귀(명심보감, 탈무드, 좋은 생각 등)를 쓰게 하여 감정조절을 통한 자기성찰 유도
- 학생이 작성한 것은 학생별로 누적철을 마련하여 추후 생활지도 및 학부모 상담 자료로 활용

❏ 적용방법별 교육별 분류

- ① 교사제시형 : 문제행동에 대해 교사가 대체활동을 제시함으로써 문제행동 중지 및 교정효과 달성

- **특기 발표**

- 학생의 특기를 발표하게 함으로써 분산된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문제 상황으로부터 학생의 감정 억제 유도

- **다양한 대체활동을 통한 문제행동 중지**

- 5가지 정도의 활동(급식정리, 칠판지우기 등)을 준비한 후 문제 상황에서 학생에게 카드를 제시하여 무작위로 선택하게 한 후 실시

- ② 학생선택형 : 학생 스스로 문제행동에 대해 대체활동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문제행동 중지 및 스스로의 교정효과 달성

- **자신이 정하는 외부 봉사활동**

- 다양한 항목의 봉사활동 등을 체계화하여 마련한 뒤, 문제 상황 발생 시 해당 학생에게 문제행동에 대한 자기성찰 후 스스로 외부봉사활동을 결정하게 함. 교사와 절차 등에 대한 협의 후 시행

- **교실 내 봉사활동 생각하기 및 실행**

- 학생으로 하여금 교실 내에서 할 일을 스스로 생각하여 정하게 하되, 활동결과에 대한 평가는 학급회의에서 실시

- ③ 학급자치형 : 학습구성원이 문제행동에 따른 대체활동을 논의하여 결정한 후, 상황발생 시 대체활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문제행동 중지 및 학생들 스스로의 교정효과 달성

● **학생자치규율(학급규칙)을 통한 문제행동 지도**

- 학생과 교사가 함께 학급자치위원회를 통해 합의한 학생자치규율 (학생들이 싫어하는 활동 중심으로 리스트를 만들)에 따라 세 번의 경고 후 적용

● **상점제를 통한 생활지도**

- 학급자치위원회를 통해 문제행동과 바른 행동을 규정(각각의 행동에 점수 부여)하여 모두 공유한 후, 상황판(학생마다 칸을 만든 후 자석을 통해 문제/바른 행동에 따라 자석을 이동)을 제작
- 학생들의 문제행동과 바른 행동을 발견 시 학생 스스로 혹은 교사가 상황판에 표시하게 하여 일별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에게 칭찬통장에 도장 부여
- 칭찬통장에 도장을 가장 많이 받은 학생에게 월말에 읽고 싶은 책을 상으로 수여한 후 해당도서는 학급도서관 기증

- ④ 교사·학부모·학생 협동형 :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학생-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 모두 문제 상황을 공유함으로써 교정효과 달성

● **나눔일지(교사, 학생, 학부모)를 통한 마음오름길**

- 학기 초에 3개 영역으로 구성된 나눔일지(교사, 학생, 학부모 영역)를 마련한 후, 문제 상황 발생 시 해당학생을 대상으로 교사·학생·학부모가 문제 상황에 대해 정보 공유
- 문제행동에 대한 정보공유 및 교정활동 결정, 이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행동변화 시 보상기제 마련

사례 1 생각교실 운영(부산 ○○중학교)

■ 생각교실 운영의 목적

체벌을 하지 않고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타임아웃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즉각적으로 생각교실로 학생을 보내 생각교실에서 학생을 지도한다.

■ 생각교실 운영과정

생각교실 운영 단계	생각교실 활동
벌칙 예고	· 학생이 학교생활규칙을 위반할 시 즉각적인 조치보다 벌칙을 예고한 뒤, 반복해서 위반 시 단계별 벌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타임아웃	· 벌칙예고 후에도 수업방해 행동을 할 경우 생각교실로 이동한다.
경위서 작성	· 본인 행동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한다.
학교장 특별 면담	· 지속적으로 문제행동을 할 경우 교장선생님과 면담을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학부모를 소환하여 특별 면담한다.
훈육·훈계 프로그램	· 학생의 잘못과 상황에 맞는 훈육·훈계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 생각교실의 단계별 지도 방법

• 벌칙예고

학생의 수업태도가 불성실 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문제행동을 했을 때 해당 교사는 학생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벌칙을 예고하고 훈계한다.

• 교실 내 지도

교사의 2회 이상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제 행동이 반복될 경우 해당 교사는 학생을 교실 내 키 높이 책상으로 보내, 서서 수업에 참가하게 한다.

• 교실 밖 격리(타임아웃)

① 교실 내에서 교사의 반복적인 지도에도 불구하고 문제 행동이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생각교실로 이동시켜 생활지도부 선생님이 해당 학생을 상담하고 즉각적인 훈육·훈계를 한다.

② 생각교실 지도 단계에 불응하여 이동 및 지도가 안 될 경우 생활지도부장이 담임선생님과 상의한 뒤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가정과 연계 지도한다.

• 학교장 특별 면담

3회 이상의 생각교실 프로그램 이행 후에도 문제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이 해당 학생 및 학부모를 특별 면담한다.

• 징계

문제행동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학생선도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교사가 징계를 요구하고 선도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한다.

■ 목적

- 교사와 학생이 서로 적대나 대립관계가 아닌 동반자의 관계임을 인식하게 한다.
- 학생들이 잘못을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성찰기회를 제공하여 자기정화에 힘쓰게 한다.
- 또래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끌어주고 밀어주는 관계임을 인식하게 한다.

■ 운영내용

- 성찰길 걷기

구 분	내 용
운영 목적	· ‘성찰길’을 걷고 동료들과 산을 오르면서 자신의 순간적인 실수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성찰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찾는 기회를 제공한다. ·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며 새로운 자신을 정립한다.
운영 내용	· ‘성찰길’ 코스는 약 14km정도로 4시간 정도 소요되며, 불편하고 좁은 길에서 시작하여 갈수록 물길이 넓어진다. 특히 마지막 코스의 아름다운 일몰 풍경은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 마지막 코스에서 성찰길을 걸으며 생각하고 느꼈던 점들을 글로(상대 친구에게 편지쓰기, 자신에게 편지쓰기, 부모님께 편지쓰기) 작성하고 발표하여 새로운 출발의 계기로 삼도록 한다.
운영 결과	· 교내외 봉사활동을 지양하고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한다. · 교사와 동행하면서 관계형성을 통해 학교생활에 자신감을 찾는다.

8. 학생자치법정

❖ 학생자치법정제도의 의미

- 미국에서 시작된 ‘청소년 법정’의 한국형 모델로 경미한 학칙 위반 학생들(과별점 학생)에게 교사가 처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학생자치법정을 개최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긍정적인 벌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참고로 법무부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학생자치법정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전국 600개교를 지원할 예정이다.(사이버 법교육센터, www.lawedu.go.kr)

❖ 학생자치법정과 상·벌점제

- 학생자치법정은 상·벌점제에 의한 누적벌점이 학교에서 정한 일정수준에 도달한 학생들에게 희망을 받아 법정에 회부하여 정해진 일시에 재판을 통해 처리하게 된다.
- 학생자치법정에 회부된 학생들이 법정에서 부과된 긍정적인 벌을 성실히 이행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상점을 부여하거나 벌점을 차감해 주고,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미이행 하게 되면 (소)선도위원회에 회부하게 된다.



운영 절차

단 계	주요 실천 내용
재판 전	• 학생자치법정 담당교사 지정 및 운영위원회 구성 • 학생자치법정 관련 사항 학교생활규정으로 제·개정 • 학생자치법정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 연수 및 홍보 • 학생자치법정 구성 인원 및 선발 • 학생자치법정 공간 구성 • 학생자치법정 회부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법정 개최 일정 통보 • 검사의 기소 및 변호인 활동 시작 • 검사, 변호인 원고 준비 • 법정구성원 시나리오 작업완료 및 법정 개최 준비
재판	• 학생자치법정 개정 • 학생자치법정 실시 • 긍정적인 과제 부여
재판 후	• 긍정적인 벌 또는 과제 이행여부 확인 – 자치법정 담당교사, 불성실 이행 및 미이행시 (소)선도위원회 회부 • 학생자치법정 운영에 대한 자체 평가회 실시 • 학생·학부모·교사 설문조사 및 소감문 작성 •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차기 학생자치법정에 반영

학생자치법정의 형태별 특징

형태	구성원	진행 방법	유의점
형사 법정형	판사, 검사, 변호사, 기타보조원	판사가 심리를 진행하고 검사의 인정심문과 변호사의 변론, 과별점자의 의견진술을 거쳐 판사의 긍정적인 과제 부여	판검사와 과별점 학생간의 감정대립 우려, 모의법정에 적합
혼합형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 기타보조원	판사가 심리를 진행하고 검사의 인정심문과 변호사의 변론, 과별점자의 의견진술을 거쳐, 배심원단의 평의 후 판사의 긍정적인 과제 부여	재판시간이 오래 걸림
배심원제형	판사, 배심원, 기타보조원	판사는 심리를 진행하고 과별점자의 의견진술을 거쳐, 배심원단의 평의 후 판사의 긍정적인 과제 부여	재판진행이 빠르고 학생들간의 감정대립이 거의 없음.

적용의 실제

(1) 학생자치법정 구성원 선발 방법

- 구성 인원 : 판사, 검사, 변호인, 배심원, 기타
- 선발 방법(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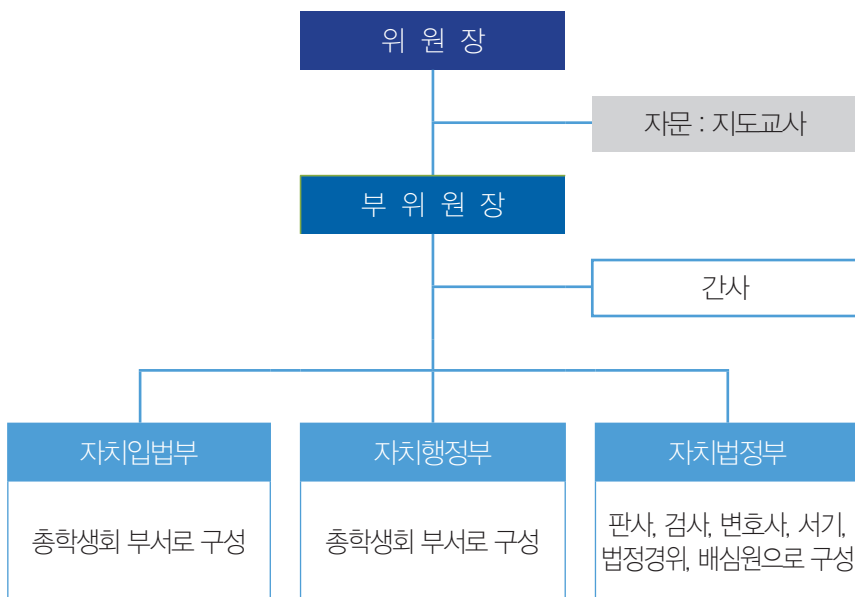
- **판사, 검사, 변호인, 기타** : 학교규칙을 잘 알고 있는 학생을 선정
- **배심원** : 학교규칙을 잘 알고 있는 학생, 과별점 학생으로서 자치법정에서 긍정적인 부과과제 중 ‘배심원으로 참여하기’를 부과 받은 학생

○ 선발 방법(예시)

일정	주요 업무	세 부 내 용
1	선발시험 - 시험시간 : 08:30 ~ 08:50 - 각교실, 담임 감독 - 시험과목 및 문항(20점)	법률상식 5문항 학생생활규정 5문항, 선도규정 5문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규정 5문항 (총 20문항 4지선다형)
2	합격자 발표 - 13:00, 방송 및 게시판 (2학년 10명, 1학년 10명)	- 2학년 고득점자 순으로 판사3, 검사2, 변호사2, 서기1, 질서2 - 1학년 고득점자 순으로 배심원10

※ 제한조건 : 별점횟수가 5회 이상이거나,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처벌을 받은 학생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

(2) 학생자치법정 운영위원회 구성표(예시)



(3) 운영위원회 역할

- 자치입법부 :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가 검입하여 생활평점제 규정 등을 제·개정함. 긍정적인 부과과제 선정 작업
- 자치행정부 : 자치법정 운영을 위한 사전 및 사후 업무 처리
 - － 과별점 학생 자료 준비 및 자치법정 회부대상자 선정
 - － 자치법정 공간 구성 및 자료 준비
- 자치법정부 : 재판 진행 및 긍정적인 별 성실 이행 여부 확인 등

(4) 학생자치법정 교육 및 홍보

- 사전 지도 : 사이버 법 교육센터 홈페이지(www.lawedu.go.kr) 활용 교육, 법원 견학 등
- 홍보 : 홍보게시물,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게재 등
 - － 교 사 : 교직원 회의 또는 직원연수 시간을 통해 학생자치법정에 대한 안내
 - － 학 생 : 대의원회를 통해 학생자치법정에 대한 교육 → 각 학급에 학생자치법정 홍보자료를 게시하고, 담임선생님이 사전 교육 실시
 - － 학부모 : 가정통신문 또는 SMS발송을 통한 홍보

(5) 학생자치법정의 구성원 및 역할(예시)

▶ 판사

① 역할

- 재판의 전반적인 진행을 정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재판이 시작할 때 재판의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 사건에 대한 변호사와 검사의 의견을 듣는다.
- 배심원단의 결정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다.
- 최종적인 판결을 선언한다.

② 주의사항

- 판사라고 해서 학생들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역할수행은 법정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 다른 학생들의 잘못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위치인 만큼 스스로 학칙을 잘 준수하여야 한다.
- 배심원단의 결정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배심원단의 판단에 큰 문제가 없는 한 가능하면 배심원단의 판결을 인정해주도록 한다.
- 중립적인 입장에서 재판의 진행을 총괄해야 한다.

③ 선발인원

- 총 4명(학생회장, 각 학년 당 1명씩 선발)

▶ 검사

① 역할

- 과별점자의 규칙 위반 사실에 대해 확인한다.
- 과별점자의 규칙 위반에 대해 규정상의 처벌을 선고한다.
- 판사와 배심원단에게 엄정한 판결을 요청한다.

② 주의사항

- 검사 역시 학교의 구성원 중 한 사람일 뿐이고, 과별점자를 무시하거나 질책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과별점자에게 인신공격 및 인격적인 모욕을 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검사가 다른 학생들의 잘못에 대한 처벌을 선고하는 위치인 만큼 스스로 학칙을 잘 준수하여야 한다.

③ 선발인원

- 3명(선도부와 학생회 중 선발)

▶ 변호인

① 역할

- 과별점자의 변론을 담당한다.
- 과별점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
- 과별점자의 피치 못할 사정이나 현재의 변화된 모습, 미래의 발전 가능성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가능한 한 낮은 수준의 처벌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변호인은 과별점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로 학생자치법정의 취지가 과별점자의 사정을 이해하고 발전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역할이 중요하다.
- 변호인은 법정에서 과별점자보다도 발언할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발언 기회를 적절하게 살려야 한다. 과별점자에게 질문을 할 때에도 그 때 얼마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는지, 그 이후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등이 잘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 가능한 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과별점자에 대한 처벌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선발인원

- 3명(학생회 대의원회 회원 중 희망자 1인, 과별점자 각 학생당 변호인 1인)

▶ 배심원

① 역할

- 검사와 과별점자 측 변호인의 주장을 듣고 판단을 내린다.
- 별도로 마련된 배심원 회의실에서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 배심원은 처벌 수준을 경감해줄 권한만을 가지고 있다.
- 만약 판사가 판결문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다시 조정한다.

② 주의사항

- 배심원은 과벌점자에게 어느 정도의 처벌을 내릴지를 결정하는 역할이므로 규정 상 정해진 처벌에서 정상참작 여부에 따라 처벌경감 정도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전적으로 처벌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다.
- 배심원단의 판결은 만장일치로 의견이 합쳐질 때 결정된다. 배심원이 가진 무거운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을 생각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 배심원은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에 따라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법정에서 안 사실과 진술만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③ 선발인원

- 10명(학생회 대의원회 회원 중 희망자 5명, 일반 학생 중 희망자 5명)

▶ 서기

① 역할

- 법정에서의 일들을 기록하고 판결을 선도부 담당 교사에게 전달한다.
- 검사나 변호사가 제출하는 각종 법정 서류를 배심원단과 판사에게 전달한다.
- 법정의 구성원들에게 재판의 개정을 통보한다.

② 주의사항

- 여러 명의 구성원에게 개정을 통보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일이다.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
- 법정에 대한 기록은 법정에 대한 기록 자체로 보존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차후에 학생자치법정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자료로도 가치가 있다. 따라서 기록을 남길 때에는 당시 상황을 이해하기 쉽도록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 법정에서의 발언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져 기록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록의 편의를 위해 부호와 약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선발인원

- 1명(학생회에서 선발)

▶ 법정경위

① 역할

- 재판이 시작되고 끝날 때 판사의 입정과 퇴정을 알린다.
-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의 분위기를 엄숙하게 유지한다.

② 주의사항

- 재판이 시작할 때 법정경위가 “재판부가 입장합니다. 모두 기립해 주십시오.”라는 안내를 하면 모두 일어서 재판부의 입장을 맞는다. 재판이 끝날 때 법정경위가 “재판부가 퇴장합니다. 모두 기립해주십시오.”라는 안내를 하면 모두 일어서 재판부의 퇴장을 기다린다.
-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간혹 소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소란을 발생시킨 사람을 제지하거나 심각한 경우 퇴장시킬 수 있다.
- 법정경위는 서기가 겸하여 활동하는 것도 가능하다.

③ 선발인원

- 1명(선도부에서 선발)

▶ 과별점자

① 역할

- 학교교칙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누적별점에 도달하면 학생자치법정에 회부된다.
- 원하는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위반 사실에 대한 정당한 상황 근거나 반성하는 모습, 개선 노력 등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② 주의사항

- 과별점자가 학생자치법정에 서게 된 것은 굉장히 큰 범죄를 저지르거나 다시는 용서받지 못할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니다. 누구나 사소한 규칙 위반으로 별점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 배심원단과 판사가 내린 판결은 엄연히 구속력을 갖는다. 판결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학생 생활 벌점 20~45점에 해당하는 학생

학생자치법정 (플래카드)

출입구

법정
경위

판사2

재판장1

판사3

사회자

검사 1

검사 2

법정서기

변호사 1

변호사 2

배심원단

배심원단

과 별 점 자

방청석 (차 과별점자 및 희망학생)

개 정	출 석 확 인	판 사 의 교 육	선서(배심원·과별첨자)	검사 인정 신문 및 기소 요지 진술	변 호 인 변 론	검사 신문 및 구형	변 호 인 최 후 변 론	과별첨자 최종이견진술	휴정 및 배심원 평의	재 개 정	배심원 합의문 낭독	판사에게 합의문 제출	판 결 선 고	폐 정
--------	------------------	-----------------------	--------------	---------------------------------------	-----------------------	---------------------	---------------------------------	----------------	-------------	-------------	------------	-------------	------------------	--------

Tip 학생자치법정 재판 횟수 및 시행

- ▶ 학생자치법정에 회부되는 인원수에 따라 재판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학생자치법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는 가급적 고정적인 재판 간격을 두고, 재판 횟수를 정하는 것이 좋다.
- ▶ 누적벌점 내용이 비슷한 과벌점 학생들끼리 모아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재판시간도 단축되고, 맞춤형 과제를 부과하기에 용이하다.

(8) 긍정적인 부과과제(예시)

- ‘교내봉사’ 10시간(1일 2시간 이내)
 - ‘학생자치법정의 배심원단으로 활동하기’ 3시간
 - 00한의원 ‘금연클리닉 참여하기’ 10회(10시간)
 - ‘안전운전에 대한 강의 듣기’ 2시간
 -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받기’ 2시간
 - ‘자치법정 방청 후 소감문 쓰기’ 각 2시간
 - ‘사회봉사활동 참여하기’ 10시간
 - ‘담임선생님께 등교시간 1시간 전에 문자메세지 보내기’ 20회(5시간)
 - ‘담임선생님께 용의복장 매일 등교시 확인받기’ 20회(10시간)
 - ‘해당선생님께 문자메세지 보내기’ 10회(1시간)
 - ‘기타’ : 교내 금연 및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참여, 교통안전 도우미, 급식질서 도우미, 일기쓰기, 선생님께 편지쓰기, 교통안전 교육 받기 활동 등
- ※ 긍정적인 벌은 단위학교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준하여 선정
- ※ 긍정적인 벌은 2주 내에 규정되어 있는 시간의 범위 내에서 맞춤형 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종류 선정

(9) 재판개정 내역 및 선도처리

연번	성명	학년	법정회부사유	부과과제 (긍정적 처벌내용)
▶ 1차 학생자치법정(일시 : ○○년 ○월 ○일, 장소 : 성찰교실)				
1	○○○	1	무단지각으로 벌점 10점 무단조퇴로 벌점 2점 무단결석으로 벌점 10점	- '자치법정 방청 후 소감문 쓰기' 2시간 - '사회봉사활동 참여하기' 10시간 - '담임선생님께 등교시간 1시간 전에 문자메세지 보내기' 20회
2	○○○	2	무단지각으로 벌점 13점 무단조퇴로 벌점 5점 복장불량으로 벌점 5점	- '자치법정 방청 후 소감문 쓰기' 2시간 - '사회봉사활동 참여하기' 10시간 - '담임선생님께 등교시간 1시간 전에 문자메세지 보내기' 20회 - '담임선생님께 용의복장 매일 등교시 확인받기' 20회

(10) 학생자치법정 참여 학생에 대한 보상

- 임명장 수여 : 법정구성원 역할에 따른 학교장 임명장 수여
- 학교 생활기록부에 활동내용 기록 : 참여 내용과 사항을 세밀하게 기록
- 학교 봉사활동 시간 인정
- 학교 봉사상 및 각종 표창 추천

(11) 기대효과

- 학교생활에 필요한 규정의 제·개정 및 운영과 해석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이 참여함으로써 학생자치의 의미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 학교생활에 있어 학생이 주장하고 싶은 의견을 학교에 개진할 기회를 제공한다.
-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며 갈등상황에 대한 문제해결 방식을 폭력과 같은 부정적 방법이 아닌 규범적 개념에 따라 해결하려는 의식을 기를 수 있다.
- 학생 생활지도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9. 학생생활협약 및 공동체생활협약 운영

학생생활협약의 개념

학생생활협약은 학칙 중에서 학생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적인 사항이나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간추려 협약형태로 정한 것을 의미한다.

학칙은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개정되지만, 학생생활협약은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자율협약이며, 학교별 여건에 따라 공동체 생활협약, 3주체 생활헌장, 학급헌장, 8조 법금, ○○인의 10가지 약속, 3무3행(三無三行)운동, 바른품성운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학생생활협약의 내용



- 학칙에 정해진 사항 중에서 강조되어야 할 사항
 - － 학생생활협약은 학생들이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칙, 특히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 중 학생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조항들이 학생생활협약으로 선정될 수 있다.

- 학칙에는 기재되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일상 생활에서 꼭 지키고자 하는 사항
 - 학생생활협약에는 “인사잘하기”, “수업시간에 친구와 장난치지 않기”, “복도에서 뛰지 않기” 등 학생들의 일상적인 학교생활과 밀접하면서도, 학칙으로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는 자율적 약속 성격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의의

- 학생들이 생활협약 제정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규칙을 만드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 그러한 규칙을 지키는 문화는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다.
- 생활협약을 통해 교원과 학생·학부모가 지향하여야 할 공동선을 충분히 인식하면 교육공동체가 학교생활에 애착과 관심을 갖게 된다.
- 학생들이 스스로 만든 생활협약을 지킬 때 준법정신이 향상되어 민주주의 사회의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게 된다.

유의사항

- 의견수렴 및 제·개정 전반에 걸쳐 학생회가 주도적 역할을 하되, 교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력이 필요하다.
- 학생생활협약의 내용이 학교규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 학생 스스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약속을 교사/부모/멘토 등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과정이 충분하여 상호 이해도를 높일수록 협약의 성공도를 높일 수 있다.
- 학생회 임원들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한다.
- 협약식이나 서약식이 학생들에 대한 학생생활협약 준수를 강요하는 요식 행위나 강제 수단이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교원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공동체 생활협약을 운영할 때는 다양한 홍보와 안내를 통해 협약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한다.
- 협약서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이 자필로 자신의 약속을 기록하는 것이 좋다.

▶ 협약제정절차

절차	학생생활협약 주요 내용 및 운영(안)	
1	방과 후 임시 대의원회 개최 (장소 : 도서실)	- 생활협약에 대한 홍보물 배포 - 학생임원들의 의견수렴 및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
2	생활협약 PPT 자료 발표 (학생회)	- 학생회장은 아침 자습시간을 활용하여 방송실에서 준비된 자료를 발표(5분) - 방송 후, 각반 학생회장은 포스트잇을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생활 협약에 대한 소감을 적어 하드보드지에 붙여 그 내용을 공유하도록 한다.
3	학급에서 지켜야할 생활 규약 만들기	- 아침 자습시간을 활용하여 학급에서 꼭 지켜야할 생활 규약을 포스트잇을 붙여 하드보드지에 붙여 그 내용을 공유하도록 한다.
4	생활협약 홍보 (학생회)	- 광고물을 제작하여 교문, 급식실 출구, 신발 갈아 신는 곳 등 홍보물 부착
5	학급생활규약 8가지 정하기	- 3월 14일에 나온 내용 중에서 학급에서 꼭 지켜야 할 8가지 생활규약을 뽑도록 한다.
6	반별 생활협약 내용 발표	- 5교시에 반별 나온 내용을 학급회장이 나와서 발표하도록 한다.
7	학부모 총회	- 학부모 생활협약 추진팀 구성 - 교사 생활협약 추진팀 구성(생활교육 T/F)
8	참여 교과	- 생활협약 관련 프로젝트 수업 추진: 포스터, PPT, 노래가사 바꿔부르기, 모둠별 토론 등
9	학생 간부 수련회	- 학생생활협약 토론회
10	학년별 공청회 실시	- 각 학급에서 나온 8가지 생활협약을 근거로 학년별로 공청회를 실시(강당에서 토론회 실시) → 학년별 8가지 생활협약 확정 → 학년 토론이 끝나면 학년별 대표들이 모여 토론 → 투표 → 생활협약 8가지 확정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학생의견 수렴(2. 25. ~ 26.)

3, 4월에 임시로 준수해야 할 공동체 생활협약을 잠정적으로 정함



각 주체별 공동체 생활협약 내용 정하기

- ① 학생의 의견 수렴(3. 28. ~ 30.)
학급자치회, 전교학생회 조직 후 전교학생회 주관으로 학급을 기초단위로 학생과 관련된 공동체 생활협약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토론하여 학생 협약안을 정함
- ② 학부모 의견 수렴(3. 21. ~ 25.)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학부모와 관련된 공동체 생활협약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부모회에서 토론하여 학부모 협약안을 정함
- ③ 교사 의견 수렴(3. 21. ~ 25.)
교사회를 중심으로 교사와 관련된 공동체 생활협약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사회에서 토론하여 교사협약안을 정함



각 주체별 설문지를 통한 의견 수렴

교사, 학생, 학부모 설문지 수합 및 분석 : 3. 28.(월)



공청회 개최 : 4. 3.(토)

강당에서 각 주체별로 2명씩 대표자를 선정하여,
상호공개토론회 형식을 통한 공청회 개최



공청회 후 이견에 대한 주체별 의견 수렴

- 교사의견수렴 : 4. 15.(금)
- 학생의견수렴 : 학급회토론(4. 4.(월), 창체시간), 전교대의원회토론(4. 8.(금))
- 학부모 의견수렴 : 5. 16.(월)



3주체 공동체 생활협약(안) 확정

가) 학생의 악속 중 쟁점사항이었던 두발, 화장, 피어싱 등에 대해, “개성의 표현을 존중하되, 공동체에서 지나친 위화감을 줄 경우는 3주체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에 각 주체대표 수용

나) 공동체 생활협약에 대한 준수의 의무

- ① 3주체 공동체 생활협약 위원회는 교사대표 2명, 학생대표 2명, 학부모 대표 2명으로 구성하여 공동체 생활협약에 관한 평가와 의견 수렴을 한다.
- ② 각 주체별로 1년에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신의 악속상황을 점검하고 상호 비교·평가·토론하여 협약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한다.
- ③ 학교에 의견수렴함을 설치하여 생활협약에 대한 각 주체에 대한 의견을 일상적으로 수합하여 각 주체의 단위에서 해결한다.
- ④ <공동체저해행위에관한규정 제8조⑨항-2>에 의하여 공동체 생활협약의 상습위반자로서 교사의 요청이 있을 때는 학교내 봉사에서 퇴학까지 할 수 있다.



우리 ○○고등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수업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바람직한 학교 수업을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그에 따라 다음의 사항들을 ‘우리의 약속과 다짐’으로 정하여 성실히 지켜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교사들은,

- ① 모든 학생들에게 친절한 태도로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질문에는 성심을 다해 설명하겠습니다.
- ② 같은 교과 담당 교사들끼리 공동으로 수업 연구를 하겠습니다.
- ③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이 있으면 반드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 ④ 수업과 관련하여 학생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내용들을 항상 준비하겠습니다.
- ⑤ 늘 학생들의 수업 이해 상태를 점검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은,

- ① 수업종이 울리면 즉시 교실에 들어와 차분히 수업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 ②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질문에는 분명히 대답하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서슴없이 질문하겠습니다.
- ③ 수업과 관련한 선생님의 지시에 언제나 예의바른 태도로 따르겠습니다.
- ④ 수업시간에 수업과 관련 없는 일체의 사적인 행동은 하지 않겠습니다.
- ⑤ 수업시간에 잠이 오면 교실 뒤쪽에 나가 서서 수업을 듣고, 잠을 깬 다음 자리에 돌아와 앉겠습니다.

○○년 ○월 ○일

○○고등학교 교사 학생 일동

1) 학생의 약속

- ① 수업시간에 즐거나 불필요한 잡담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수업활동에 참여한다.
- ② 교실, 복도 등에 껌, 침을 뱉지 않고, 쓰레기 없이 항상 교실을 깨끗이 사용한다.
- ③ 감정적 대꾸보다는 타인의 말을 존중하고 이성적 대화를 예의바르며 소신 있게 한다.
- ④ 학생 상호간에 욕을 하지 않고, 존중하며 친절할 태도로 대한다.
- ⑤ 컴퓨터 사용시간을 줄이고, 게임을 자제한다.
- ⑥ 학교 비품을 파손하지 않고 아끼고 청결하게 사용한다.
- ⑦ 급식시간에 새치기를 하지 않는다.
- ⑧ 교실, 복도 등에서 큰소리로 떠들거나 심한 장난을 치지 않고 정숙한 학습 분위기를 만든다.
- ⑨ 지정된 교복을 단정하게 입는다.
- ⑩ 거짓말, 핑계, 내송을 떨지 않고 솔직하게 말한다.
- ⑪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정리정돈과 청소를 자율적으로 한다.
- ⑫ 일과 중 무단 외출을 하지 않는다.
- ⑬ 서로 인사하며 배려하고 웃음이 넘치는 학교분위기를 만들겠다.
- ⑭ 가정에서 외출할 때는 꼭 어른의 허락을 받는다.
- ⑮ 두발, 화장, 피어싱은 개성의 표현을 존중하되, 공동체에 지나친 위화감을 줄 경우는 3주체 공동체 생활협약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교사의 약속

- ① 체벌을 하지 않는다.
- ② 준비를 철저히 하여 지루하지 않게 학생이 참여하는 수업을 한다.
- ③ 학생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 ④ 학생에게 기회를 균등히 주고 학생 의견을 경청하며, 차별하고 비교하지 않는다.
- ⑤ 학생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감정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지 않는다.
- ⑥ 학생 개개인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일대일 상담을 많이 한다.
- ⑦ 학생들에게 친절하고 상냥하지만 혼낼 때는 단호하고 따끔하게 한다.
- ⑧ 칭찬을 많이 하고 학생의 작은 실수는 관용과 사랑을 바탕으로 이해해 준다.
- ⑨ 원인행위가 없을 경우는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지 않는다.
- ⑩ 학부모와 항상 거리감 없는 대화와 상담을 한다.
- ⑪ 교사 각자의 학습·교육 자료를 공유하고 힘든 일은 서로 도우면서 함께한다.
- ⑫ 항상 밝게 웃으며 많은 대화와 소통으로 즐거운 학교가 되도록 노력한다.
- ⑬ 일체의 존지를 받지 않는다.

3) 학부모의 약속

- ① 학교 일에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서로 소통한다.
- ② 학교 일에 뒤에서 비난하지 않고 자신 있게 공식적 통로를 통해 의견을 개진한다.
- ③ 학생과 1주일에 한번 이상 대화하고, 학교생활에 관심을 갖는다.
- ④ 학생들의 사춘기 상황을 이해하고 차분하고 냉정하면서 이성적인 대화를 한다.
- ⑤ 아침밥은 꼭 먹이며, 군것질보다는 가정에서 간식을 챙겨준다.
- ⑥ 1달에 한번 이상 자녀와 등산, 영화보기, 연극관람, 운동경기 등을 함께 한다.
- ⑦ 친한 친구의 이름을 알고, 관심을 갖고 내 자식처럼 대한다.
- ⑧ 자녀의 자기결정권(장래 희망, 꿈, 진학, 진로 등)을 존중한다.
- ⑨ 타 학생과 비교하거나 간섭하지 않고 잔소리보다는 자녀를 신뢰하며, 인격적으로 존중한다.
- ⑩ 성적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지 않고, 인성적 측면에서 감싸준다.
- ⑪ 충지를 갖다 주지 않는다.
- ⑫ 학생 앞에서 선생님을 비난하지 않고, 교육적 전문성을 존중한다.
- ⑬ 잠을 충분히 재운다.

4) 공동체 생활협약에 대한 준수의 의무

- ① 3주체 공동체 생활협약위원회는 교사대표 2명, 학생대표 2명, 학부모 대표 2명으로 구성하여 공동체 생활협약에 관한 평가와 의견수렴을 한다.
- ② 각 주체별로 1년에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신의 약속상황을 점검하고 상호 비교·평가·토론하여 협약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한다.
- ③ 학교에 의견수렴함을 설치하여 생활협약에 대한 각 주체에 대한 의견을 일상적으로 수합하여 각 주체의 단위에서 해결한다.
- ④ <공동체 저해행위에 관한 규정 제 8조 ⑨항-2>에 의하여 공동체 생활협약의 상습위반자로서 교사의 요청이 있을 때는 학교 내 봉사에서 퇴학까지 할 수 있다.

■ 전문

학교 교육의 목표는 단지 전문 지식의 전수나 습득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 인성의 함양에 있다. 이를 위해 모든 구성원이 공동의 가치에 합의하고, 지향하고자 하는 이상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학교생활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려면 공동생활에서 지켜야 할 원칙들을 존중해야만 한다.

■ 일반적인 원칙

-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한다.
- 상대방을 대할 때는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다른 의견이나 생각을 존중한다.
- 어떤 형태의 폭력도 용납하지 않는다.
- 갈등이 생기면 외면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는다.
- 비판할 때는 감정에 치우침 없이 객관적이고 건설적으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인격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한다.
- 비판이란 언제나 공정한 해결책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 객관적인 비판은 겸허히 수용한다.
- 다른 사람의 노력과 성과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다.
-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이므로 서로를 격려한다.
- 합의된 사항은 모든 사람이 지킨다.

■ 개별 세부 원칙

- 학생들이 지켜야 할 원칙
 -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그러므로 학교의 분위기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달려있다.
- 우리는 이렇게 갈등을 해결하고자 한다.
 - 상호간에 절대로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 주먹다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이를 목격하였을 때는 방관하지 않고 말린다.
 - 생각이 다른 경우에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사안을 객관적으로 직시하여 해결점을 찾는다.
- 우리는 이렇게 배우고자 한다.
 - 최적의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다른 학생들을 방해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격려한다.
 -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공평해야 한다. 가능한 한 서로를 격려하고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우리는 서로 이렇게 결속하고자 한다.
 - 학급 공동체는 모두에게 열려있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으며 학급 공동체의 목적은 모든 학생들을 통합하는 데 있다. 학급 대표뿐만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학부모가 지켜야 할 원칙
 - 우리 학부모들은 학교 내·외를 막론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능한 한 좋은 학습 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기여하는 것을 과제라고 여긴다.
 - 우리의 목적은 자녀들의 인격적, 사회적 발전을 장려하는 것이다.
 - 우리는 화기애애한 환경에서 바람직한 학습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배려한다.
 - 우리는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과 열린 마음으로 대화한다.
 - 우리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 관심을 갖고 건설적으로 참여한다.
 -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 교사가 지켜야 할 원칙
 - 바람직한 교수 - 학습 분위기 조성이 교사 업무의 기본임을 알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 우리에게 맡겨진 학생들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솔선수범해야 함을 명심한다.
 - 매일 전문성 있는 수업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 우리는 학교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이때 적절한 도움을 주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 모든 사람들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행동하고 결정한다.
 - 모든 교사는 예외 없이 이 기본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유념한다.
- 학교운영자가 지켜야 할 원칙
 - 학교 운영자는 모든 당면 과제를 협력하여 풀어나가도록 하며, 본 학교 규정의 일반 원칙과 개별 세부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학교 운영자는 모든 구성원의 이해를 공정하게 조정하는 것에 유념하며 법적, 교육적으로 허용된 테두리 안에서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지를 보장해준다.
- 결론 : 본 학교 규정은 분젠 김나지움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상호 관계에서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지침이다.

출처: 서울특별시 교육청(2007), 외국의 생활규정 들여다보기.

수업 및 학교생활에 관한 규칙

- 1) 수업의 시작과 끝마침은 반드시 학칙에 따라야 한다.
- 2) 수업 중에는 모두가 서로에게 친근하고 바르게 행동하며 좋은 태도를 가져야 한다.
- 3) 모든 학생은 제시간에 자신의 수업교실에 도착해야 한다.
- 4) 수업 중 학생들은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5) 학생들은 수업일 중 선생님의 허락 없이 학교 밖으로 나갈 수 없다.
- 6) 본인이나 다른 학생에게 사고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 선생님에게 곧바로 알려야 한다.
- 7) 모든 학생에게는 학교물건을 잘 관리하고 사용할 책임이 있으며, 학교 물건을 깨끗하고 쾌적하며 손상이 없게 사용해야 한다.
- 8) 학생들의 음주나 흡연은 금지된다. 핀란드 법률에 따라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음주나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학년생활규칙 : 1 ~ 6학년

- 1) 보통 수업일의 경우 아침조화는 자기반에서 갖는다.
- 2) 학생들은 쉬는 시간에 학교 밖 운동장으로 나가야 하며, 교실안에서 쉬는 것은 선생님의 승인을 받은 특별한 경우 일 때만 허락된다.

학교생활규칙 : 7 ~ 9학년

- 1) 아침조화는 학교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 2) 학생들은 쉬는 시간에 학교 밖 운동장에서 보내야 한다. 본관 입구 안 복도주변에서 쉬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허락된다.

학생자치규정

- 1) 학교폭력 없는 학교를 만든다.
- 2) 내가 대우 받기 원하는 것처럼 남을 대우해 준다.
- 3) 학교 및 다른 사람의 소유물(물건들)을 존중한다.
- 4) 수업시간에 MP3플레이어, 핸드폰 및 다른 전자제품들은 사용할 수 없다.
- 5) 사진은 선생님의 허락이 있을 때에만 찍을 수 있다.
- 6) 모자는 쉬는 시간동안만 착용할 수 있다.
- 7) 수업시간에는 껌을 씹을 수 없다.
- 8) 점심 먹는 공간과 구내식당을 깨끗이 사용한다.
- 9) 말을 공손히 하며 욕설을 하지 않는다.
- 10)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한다.
- 11)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한다.
- 12) 다른 사람의 숙제나 작품을 베껴서는 안 된다.

출처: 김병찬 (2012). 해외학교규칙 제정 및 운용사례 - 핀란드편 「교육개발」 봄호.

기획·총괄

고영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국 국장)
오승걸 (교육과학기술부 학교문화과 과장)
최민호 (교육과학기술부 학교문화과 행정사무관)
안해벽 (교육과학기술부 학교문화과 교육연구사)
안상현 (법제처 대변인)
이준형 (법제처 대변인실 행정사무관)

집필진

김경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영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성윤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남규 (경수초등학교 교장)
김성기 (인천 계산고등학교 교장)
유석범 (잠일고등학교 교감)
설선국 (장원중학교 교사)
이상민 (부산시교육청 학교폭력지도과 장학사)

자문 및 검토

허종렬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김갑상 (대구 수성고등학교 교장)
박종원 (충북 청주중학교 교감)
서권수 (인천 옥련여자고등학교 교감)

디자인 및 일러스트

신혜진 (책임 디자이너) · 김현주 (일러스트레이터)
이환희 · 최한나 · 류혜옥 (디자이너)

서로를 위한 **약속**
학교규칙
운영매뉴얼

중등용

인 쇄 2012년 4월 30일

발 행 2012년 4월 30일

발행인 이 주 호

발행처 교육과학기술부
전화 02-6222-6060
인천광역시교육청
전화 032-423-3303

디자인 (주)계문사
전화 02)725-5216

